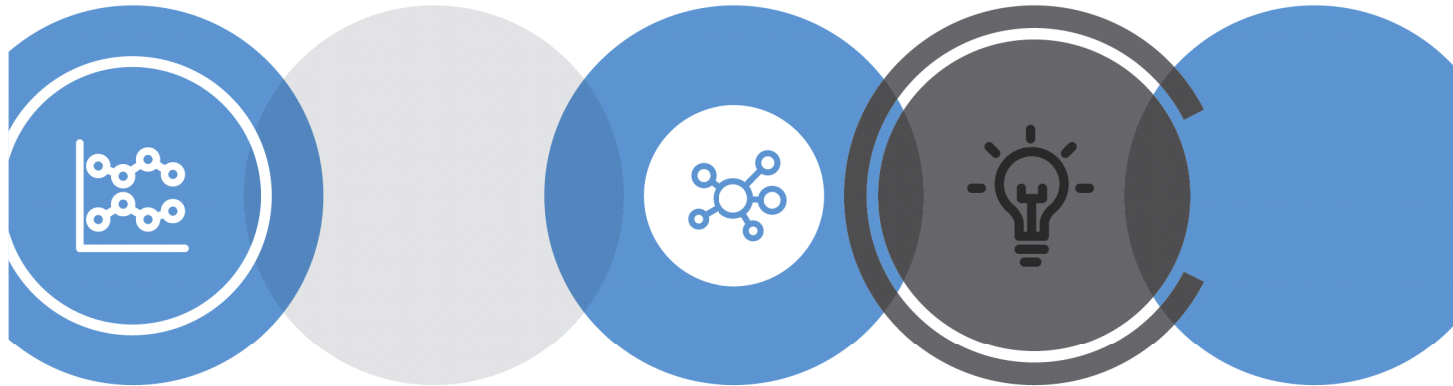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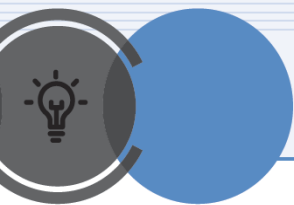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2018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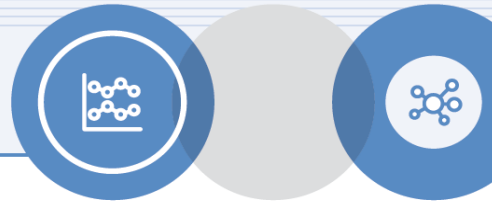
# 목차 Contents

##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3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5

##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중재	9
제1절 개요	9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9
2. 중재부의 구성	10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0
1. 청구현황	10
2. 청구권별 현황	11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11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12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13
6. 중재부별 접수현황	14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5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5
1. 피해구제율 현황	16
2. 청구권별 처리결과	17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1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2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3
6. 중재부별 처리결과	24
7.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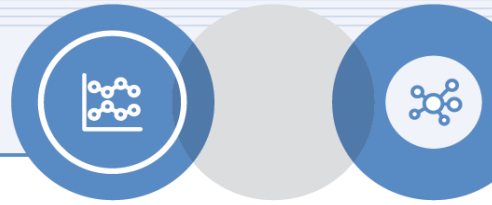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26
제5절	평가	27
<b>제2장</b>	<b>시정권고</b>	<b>29</b>
제1절	개요	2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30
	1.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30
	2. 시정권고 현황	31
	3. 침해 유형별 분석	31
	4. 매체 유형별 분석	38
제3절	평가	39
<b>제3장</b>	<b>선거기사심의</b>	<b>41</b>
제1절	개요	41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41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4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44
	2. 2018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47
제3절	평가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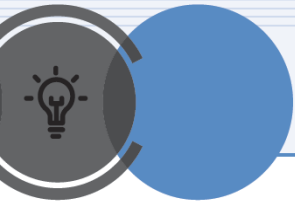
# 목차 Contents

##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53
제1절 개요	5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4
1. 상담신청 유형	54
2. 상담 처리결과	55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6
4. 상담매체 유형	56
5. 상담신청인 유형	57
6. 상담대상 유형	57
7. 상담내용 유형	58
제3절 평가	59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60
제1절 개요	6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1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61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62
3. 〈분쟁해결 전문연수〉	62
4. 교육콘텐츠 개발	69
제3절 평가	70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72
제1절 개요	7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73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73
2. 토론회 개최	78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83
제3절 평가	84



<b>제4장</b>	<b>이용만족도 조사</b>	<b>85</b>
	제1절 개요	85
	제2절 주요 조사결과	87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87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9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89
	제3절 평가	90
<b>제5장</b>	<b>홍보</b>	<b>92</b>
	제1절 개요	9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3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93
	2. 위원회 광고 집행 현황	93
	3. 온라인 기반 홍보 활동 강화	95
	4. 대국민 대상 참여 홍보 활동 전개	95
	5. 모바일 홍보 기반 마련	97
	6.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97
	제3절 평가	98
<b>제6장</b>	<b>기타 주요활동</b>	<b>99</b>
	제1절 개요	99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99
	2. 국제컨퍼런스 협력	101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03
	4. 직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104
	5. 사회공헌활동	105



# 목차 Contents

## 제4부 2019년도 업무계획

제1장 2019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09
제2장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12

## 부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119
2. 설립근거 및 기능	129
3. 연혁	129
4. 기구	131
5. 2018년 예·결산 현황	133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33
7. 2018년 주요 발간물 목록	135

#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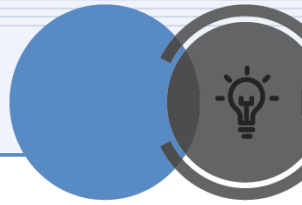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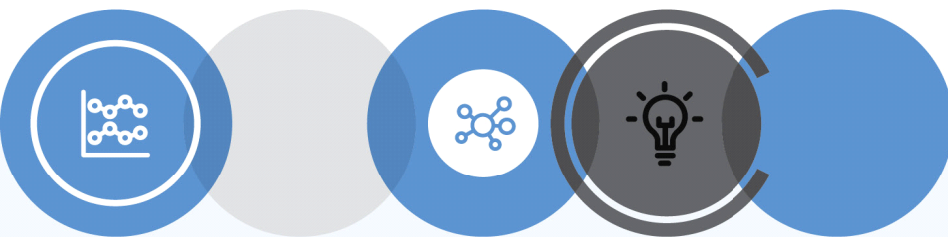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11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11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2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13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13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14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5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16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16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17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8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19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19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19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1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2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3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24
표 2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32
표 2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39
표 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42
표 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45
표 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45
표 26	상담신청 유형	55
표 27	상담 처리결과	55
표 28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6
표 29	상담매체 유형	57
표 30	상담신청인 유형	57
표 31	상담대상 유형	58
표 32	상담내용 유형	58
표 33	2018년도 교육 실시현황	61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62



# 제1부 총론



## 제 1 장

#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언론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원회의 사회적·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18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이행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심리 진행으로 언론보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정권고 심의 강화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언론보도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등 위원회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위원회의 공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둘째, 위원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디지털 미디어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연구·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상술한 중점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매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1. 위원회 공적 책임과 역할 제고

- 신속한 조정심리를 통한 언론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17년 대비 조정신청사건 건수가 증가(2017년 3,230건 → 2018년 3,562건)했음에도 조정사건처리 평균기간을 22일에서 19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법정업무인 시정권고 심의의 효율화·실질화·집중도 제고를 위해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여 시정권고 심의 업무 전담 부서를 마련하였으며,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도입, 심의대상 매체 확대(2,192개 → 2,392개), 지역 상주 심의원의 해당 지역 기사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 2015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시정권고 심의(2015년 438건 → 2018년 1,275건) 처리결과를 도출하였다.
- 2018년 한국 사회의 중요 화두였던 ‘미투(me too) 운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제4조 성폭력피해자)을 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신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진행에 기여하는 한편, 선거관련 심의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심의제도 개선 사항, 심의기준 일관성 제고 방안 등 선거보도 심의 공정성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 2.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

-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짜뉴스 관련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일괄구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정신청 단계에서 원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과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에 매개·게재된 보도에 대해서도 일괄구제를 요청하는 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문안>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펌글 등을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가 게재될 경우, 조정과정에서 이의 열람·검색을 차단토록 하고 언론사 운영 SNS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성과를 거두었다.
- 조사관 비상주 중재부(충북, 강원, 제주중재부)의 심리 진행 일관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조사2팀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조정심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사무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무소 상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역의 분기별 중요상담사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연수 등 분쟁해결연수와 정의 지역사무소 시범 운용, 해당 지역 소재 기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주도적 실시 등을 추진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거두었다.

## 제 2 장

#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 1. 외부기관과의 교류 통한 피해구제 업무 점검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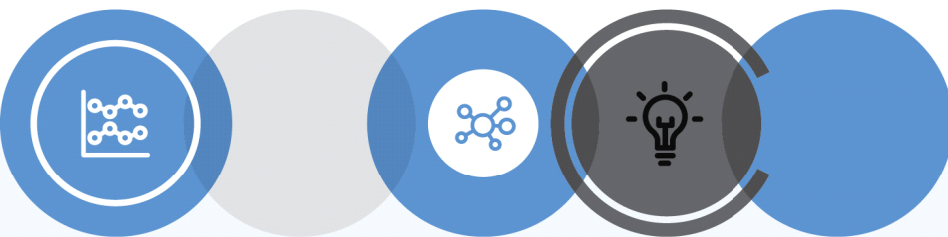
- 대한상사중재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조정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위원회 조정실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전 방위적으로 검토하였다.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보도문 간담회를 열어 언론피해구제 및 효율적인 조정심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2. 위원회 학술, 연구 능력 강화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신규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언론법제 분야 연구에 있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학술 논의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 및 사회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학술, 연구행사를 진행하였다.

### 3. 디지털 기반 이용자 중심 홍보사업 진행

- 캐릭터 공모전 당선작 ‘어니’를 위원회 대표 캐릭터로 선정하고 이모티콘으로 제작, 배포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높은 디지털 기반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친근한 위원회로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웹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제작 콘텐츠가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에 소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부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 1 장

## 언론조정 · 중재

### 제 1 절 개 요

####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법익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1,087건, 2010년 2,205건, 2018년 3,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조정건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조정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사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매년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피해구제율은 조정 및 중재절차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안착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를 원칙으로 당사자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승패가 엄정히 갈리는 판결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쟁해결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서울 8개, 지역 10개)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2 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3,56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지난해 3,230건보다 10.3%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조정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터넷 매체 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16. 1. 1. ~ 2018. 12. 31.)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청 구 건 수	3,170	3,230	3,562

## 2. 청구권별 현황

2018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정보도청구가 1,781건으로 전체 조정사건의 절반인 50.0%를 기록했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 순이었다.

정정보도청구 비율은 지난해보다 1.8%p 증가하였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비율 역시 각 0.6%p, 2.1%p씩 증가한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비율은 30.2%로 2017년 대비 4.4%p 하락하였다.

표 2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청구명 \ 연 도	2016	2017	2018	합 계
정 정	1,555 (49.1)	1,557 (48.2)	1,781 (50.0)	4,893 (49.1)
반 론	386 (12.2)	362 (11.2)	419 (11.8)	1,167 (11.7)
추 후	160 (5.0)	194 (6.0)	287 (8.1)	641 (6.4)
손 배	1,069 (33.7)	1,117 (34.6)	1,075 (30.2)	3,261 (32.7)
계	3,170 (100)	3,230 (100)	3,562 (100)	9,962 (100)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2018년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대상 청구건수가 2,141건으로 전체 매체 유형 가운데 60.1%를 차지하였고, 이어 신문 451건(12.7%), 인터넷뉴스서비스 421건(11.8%), 방송 331건(9.3%), 뉴스통신 192건(5.4%)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중은 2016년 52.4%, 2017년 57.0%, 2018년 60.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7년과 비교해 신문은 11.8%에서 12.7%로 소폭 상승한 반면, 방송은 11.2%에서 9.3%로 하락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신청이 없었던 IPTV 대상의 조정사건은 2건이 접수처리되었다.

**표 3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8.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6	2017	2018	합 계
신문	일간신문	405 (12.8)	261 (8.1)	306 (8.6)	972 (9.8)
	주간신문	168 (5.3)	119 (3.7)	145 (4.1)	432 (4.3)
방 송		423 (13.3)	361 (11.2)	331 (9.3)	1,115 (11.2)
잡 지		16 (0.5)	23 (0.7)	19 (0.5)	58 (0.6)
뉴스통신		165 (5.2)	206 (6.4)	192 (5.4)	563 (5.7)
인터넷신문		1,661 (52.4)	1,842 (57.0)	2,141 (60.1)	5,644 (56.7)
IPTV				2 (0.1)	2 (0.0)
인터넷뉴스서비스		330 (10.4)	416 (12.9)	421 (11.8)	1,167 (11.7)
기 타		2 (0.1)	2 (0.1)	5 (0.1)	9 (0.1)
계		3,170 (100)	3,230 (100)	3,562 (100)	9,962 (100)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침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3,451건(96.9%)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가 59건(1.7%)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성명권 침해가 19건(0.5%), 재산상 손해가 18건(0.5%), 사생활 침해가 6건(0.2%), 기타가 7건(0.2) 등으로 각 1% 미만의 비율을 기록했다.

표 4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 도 침해유형	2016	2017	2018	합 계
명예훼손	2,972 (93.8)	3,060 (94.7)	3,451 (96.9)	9,483 (95.2)
초상권 침해	81 (2.6)	105 (3.3)	59 (1.7)	245 (2.5)
음성권 침해		4 (0.1)	2 (0.1)	6 (0.1)
성명권 침해	19 (0.6)	18 (0.6)	19 (0.5)	56 (0.6)
사생활 침해	51 (1.6)	8 (0.2)	6 (0.2)	65 (0.7)
재산상 손해	33 (1.0)	8 (0.2)	18 (0.5)	59 (0.6)
기 타	14 (0.4)	27 (0.8)	7 (0.2)	48 (0.5)
계	3,170 (100)	3,230 (100)	3,562 (100)	9,962 (100)

\* ( ) 안의 숫자는 %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표 5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 도 신청인	2016	2017	2018	합계
개 인	1,919 (60.5)	2,077 (64.3)	2,091 (58.7)	6,087 (61.1)
국가기관	64 (2.0)	64 (2.0)	68 (1.9)	196 (2.0)
지 자 체	90 (2.8)	144 (4.5)	137 (3.8)	371 (3.7)
공공단체	67 (2.1)	54 (1.7)	103 (2.9)	224 (2.2)
일반단체	373 (11.8)	246 (7.6)	499 (14.0)	1,118 (11.2)
종교단체	110 (3.5)	57 (1.8)	86 (2.4)	253 (2.5)
기 업 체	390 (12.3)	424 (13.1)	442 (12.4)	1,256 (12.6)
언 론 사	74 (2.3)	71 (2.2)	61 (1.7)	206 (2.1)
교육기관	83 (2.6)	93 (2.9)	75 (2.1)	251 (2.5)
계	3,170 (100)	3,230 (100)	3,562 (100)	9,962 (100)

\* ( ) 안의 숫자는 %

2018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청구한 사건이 2,091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가운데 58.7%를 기록했고, 이어 일반단체 499건(14.0%), 기업체 442건(12.4%), 지자체 137(3.8%), 공공단체 103건(2.9%), 교육기관 75건(2.1%), 언론사 61건(1.7%)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개인,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의 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공공단체나 종교단체가 증가했고, 특히 일반단체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8년 접수된 3,562건의 사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580건(72.4%), 10개 지역중재부에서 982건(27.6%)을 처리하였다. 10개의 지역중재부 가운데서는 경기중재부가 275건(7.7%), 대구중재부와 광주중재부가 각 118건(3.3%)과 113건(3.2%)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6. 1. 1. ~ 2018. 12. 31.)

중재부 \ 연 도	2016	2017	2018	합 계
서울중재부	2,266 (71.5)	2,371 (73.4)	2,580 (72.4)	7,217 (72.4)
부산중재부	110 (3.5)	54 (1.7)	71 (2.0)	235 (2.4)
대구중재부	73 (2.3)	114 (3.5)	118 (3.3)	305 (3.1)
광주중재부	163 (5.1)	82 (2.5)	113 (3.2)	358 (3.6)
대전중재부	66 (2.1)	71 (2.2)	78 (2.2)	215 (2.2)
경기중재부	183 (5.8)	343 (10.6)	275 (7.7)	801 (8.0)
강원중재부	15 (0.5)	29 (0.9)	19 (0.5)	63 (0.6)
충북중재부	50 (1.6)	42 (1.3)	75 (2.1)	167 (1.7)
전북중재부	55 (1.7)	68 (2.1)	94 (2.6)	217 (2.2)
경남중재부	145 (4.6)	41 (1.3)	89 (2.5)	275 (2.8)
제주중재부	44 (1.4)	15 (0.5)	50 (1.4)	109 (1.1)
계	3,170 (100)	3,230 (100)	3,562 (100)	9,962 (100)

\* ( ) 안의 숫자는 %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8년 신청인들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가장 많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건수는 2,513건으로 70.6%의 비율을 보였고,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760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방식의 방문접수가 207건(5.8%), 우편접수가 79건(2.2%), 구술접수가 3건(0.1%)을 기록했다.

사건접수의 91.9%가 전자우편 및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져, 신청인들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6. 1. 1. ~ 2018. 12. 31.)

구분 연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계
2016	302 (9.5)	114 (3.6)	2,265 (71.5)	488 (15.4)	1 (0.1)		3,170 (100)
2017	189 (5.9)	74 (2.3)	2,236 (69.2)	725 (22.4)	6 (0.2)		3,230 (100)
2018	207 (5.8)	79 (2.2)	2,513 (70.6)	760 (21.3)	3 (0.1)		3,562 (100)

\* ( ) 안의 숫자는 %

## 제 3 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년 조정사건 총 3,562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536건(43.1%), 조정성립 1,081건(30.3%), 조정불성립결정 645건(18.1%), 직권조정결정 200건(5.6%), 기각 88건(2.5%), 각하 12건(0.3%) 순이었다.

처리결과 중 취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된 사건 외에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써 보도게재, 손해배상 등이 약속 또는 이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536건의 취하 중 피해구제된 사건이 1,264건, 피해구제가 안 된 사건이 272건으로 약 82.3%가 취하 전 당사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6. 1. 1. ~ 2018.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049	317	72.3%
	%	30.3	5.7	3.7	13.1	3.4	0.6	33.1	10.0	
2017	3,230	915	72	61	488 (6)	122	86	1,234	252	73.7%
	%	28.3	2.2	1.9	15.1	3.8	2.7	38.2	7.8	
2018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	30.3	3.1	2.5	18.1	2.5	0.3	35.5	7.6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text{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계속} + \text{기각} + \text{각하} + \text{계류}))} \times 100$$

### 1.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요건을 구비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가 된 사건 등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8년 피해구제율은 71.4%로 2017년 피해구제율(73.7%)에 비해 2.3%p 하락하였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70% 초반대로 일정한 수준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피해구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9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6		3,170	127	3,043	2,201	72.3%
2017		3,230	208	3,022	2,227	73.7%
2018		3,562	100	3,462	2,471	71.4%

## 2. 청구권별 처리결과

###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2.6%, 반론보도청구 35.3%, 추후보도청구 8.0%, 손해배상청구 30.6%로, 2017년(정정보도청구 31.3%, 반론보도청구 27.6%, 추후보도청구 11.3%, 손해배상청구 27.4%)과 비교해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사건은 그 특성상 조정이 아닌 취하(구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는데 (89.5%), 이는 신청인이 추후보도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판결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심리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후보도 합의에 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10 |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781 (100)	581 (32.6)	113 (6.3)	329 (18.5)	39 (2.2)	7 (0.4)	559 (31.4)	153 (8.6)
반론	419 (100)	148 (35.3)	18 (4.3)	59 (14.1)	17 (4.1)		142 (33.9)	35 (8.4)
추후	287 (100)	23 (8.0)	4 (1.4)	1 (0.3)	1 (0.3)	1 (0.3)	257 (89.5)	
손배	1,075 (100)	329 (30.6)	65 (6.0)	256 (23.8)	31 (2.9)	4 (0.4)	306 (28.5)	84 (7.8)
계	3,562 (100)	1,081 (30.3)	200 (5.6)	645 (18.1)	88 (2.5)	12 (0.3)	1,264 (35.5)	272 (7.6)

\* ( ) 안의 숫자는 %

### 사 례 | 정정보도

A언론사는, 신청인인 B언론사 전 대표와 특정 체육단체 전 대표 간 친분으로 B언론사가 해당 단체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보도한 바 없음을 들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해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 례 | 반론보도

C언론사는 공공기관 이사장 후보였던 신청인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서 과거 감사 재직 당시 업무부적격자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감사로 선임됐고 업무부적격과는 무관함을 들어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 례 | 추후보도

D언론사는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조교인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 받았음을 들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추후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 례 | 손해배상 1

E언론사는 축구 에이전트인 신청인이 태국에서 승부조작으로 체포된 피의자와 공범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들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언론사가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액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 례 | 손해배상 2

F언론사는 M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임산부를 포함한 제품사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출시시점부터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고지해왔으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1) 처리현황

2018년 손해배상청구 1,075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329건(30.6%), 직권조정결정 65건(6.0%), 조정불성립결정 256건(23.8%), 기각 31건(2.9%), 각하 4건(0.4%), 취하 390건(36.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6	1,069 (100)	325 (30.4)	66 (6.2)	35[2] (3.3)	144 (13.5)	35 (3.3)	5 (0.5)	359 (33.6)	100 (9.4)
2017	1,117 (100)	306 (27.4)	24 (2.1)	16 (1.4)	200[2] (17.9)	34 (3.0)	29 (2.6)	421 (37.7)	87 (7.8)
2018	1,075 (100)	329 (30.6)	42 (3.9)	23[3] (2.1)	256[4] (23.8)	31 (2.9)	4 (0.4)	306 (28.5)	84 (7.8)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 안의 숫자는 %

1,075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59건(5.5%)이지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원 조정대상기사 삭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건수는 684건(63.6%)이었다.

표 12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6. 1. 1. ~ 2018.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6	1,069	70	6.5%
2017	1,117	83	7.4%
2018	1,075	59	5.5%

##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청구액은 최고액은 100억 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000원이었다. 조정액 최저액은 25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900만 원이었다. 한편, 조정액 평균액은 196여 만 원으로 작년 137여만 원과 비교할 때 다소 증가했다. 2017년에는 명예훼손(24건)에 비해 초상권 침해(50건)에서 인용 빈도가 높았던 반면, 2018년은 명예훼손의 인용 빈도(45건)가 초상권 침해의 인용 빈도(11건)보다 높았다. 한편, 2018년에는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타 침해유형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6. 1. 1. ~ 2018. 12. 31. / 단위: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6		100,000	10,786,381,412	113,115,649	20,000,000
2017		0 <sup>1)</sup>	10,800,000,000	112,446,512	20,000,000
2018		1,000	10,000,000,000	90,317,695	15,000,000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6. 1. 1. ~ 2018. 12. 31. / 단위: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6		10,000	30,000,000	2,235,263	1,000,000
2017		100,000	10,000,000	1,369,737	1,000,000
2018		250,000	9,000,000	1,960,417	1,000,000

1) 2017서울조정2168·2169 사건 : 배상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피해구제가 되는 날까지 매일 1원씩을 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 간주로 종결됨.

**표 15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8. 1. 1. ~ 2018.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45	400,000	9,000,000	2,245,946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11	250,000	3,000,000	861,111	5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1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2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기타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8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075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978건(9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 56건(5.2%), 성명권 침해 18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법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용건수 59건 중 76.3%인 45건에서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액 또한 2017년의 7,000,000원보다 높은 9,00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6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침해유형 \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978 (100)	314 (32.1)	60 (6.1)	233 (23.8)	16 (1.6)	4 (0.4)	279 (28.5)	72 (7.4)
초상권 침해	56 (100)	10 (17.9)	3 (5.4)	11 (19.6)	14 (25.0)		15 (26.8)	3 (5.4)
음성권 침해	2 (100)						2 (100)	
성명권 침해	18 (100)	2 (11.1)		10 (55.6)			4 (22.2)	2 (11.1)
사생활 침해	6 (100)	1 (16.7)		1 (16.7)			2 (33.3)	2 (33.3)
재산상 손해	10 (100)		2 (20.0)	1 (10.0)	1 (10.0)		1 (10.0)	5 (50.0)
기타	5 (100)	2 (40.0)					3 (60.0)	
계	1,075 (100)	329 (30.6)	65 (6.0)	256 (23.8)	31 (2.9)	4 (0.4)	306 (28.5)	84 (7.8)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주간신문(46.9%), 일간신문(36.3%), 방송(3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작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한편, 취하된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에 따라 피해구제된 비율은 인터넷뉴스서비스(51.1%), 뉴스통신(43.8%), 인터넷신문(3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조정건수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외에 기사 확산방지 등 신속한 피해구제조치를 원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을, 피신청인 측이 즉각적인 기사수정이나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 매체 특성을 감안한 방식으로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신 문	일간신문	306 (100)	111 (36.3)	28 (9.2)	76 (24.8)	7 (2.3)		73 (23.9)	11 (3.6)
	주간신문	145 (100)	68 (46.9)	6 (4.1)	38 (26.2)	2 (1.4)		16 (11.0)	15 (10.3)
방 송		331 (100)	114 (34.4)	23 (6.9)	85 (25.7)	11 (3.3)	3 (0.9)	73 (22.1)	22 (6.6)
잡 지		19 (100)	4 (21.1)	2 (10.5)	4 (21.1)			7 (36.8)	2 (10.5)
뉴스통신		192 (100)	56 (29.2)	8 (4.2)	17 (8.9)	4 (2.1)		84 (43.8)	23 (12.0)
인터넷신문		2,141 (100)	638 (29.8)	122 (5.7)	353 (16.5)	54 (2.5)	9 (0.4)	794 (37.1)	171 (8.0)
IPTV		2 (100)						2 (100)	
인터넷 뉴스서비스		421 (100)	86 (20.4)	11 (2.6)	72 (17.1)	10 (2.4)		215 (51.1)	27 (6.4)
기 타		5 (100)	4 (80.0)						1 (20.0)
계		3,562 (100)	1,081 (30.3)	200 (5.6)	645 (18.1)	88 (2.5)	12 (0.3)	1,264 (35.5)	272 (7.6)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451건 중 피해구제 후 취하한 사건이 1,235건(35.8%), 피해구제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취하한 사건이 255건(7.4%)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43.2%가 취하로 종결되었다. 그 다음으로 1,063건(30.8%)이 조정성립, 622건(18.0%)이 조정불성립결정, 195건(5.7%)이 직권조정결정으로 처리되었다.

초상권 침해 관련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은 2017년 대비 44.8%에서 18.6%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진만으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온라인 여성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신청인이 직접 게시한 사진을 보도에 인용한 사례 등에 대해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표 18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침해유형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451 (100)	1,063 (30.8)	195 (5.7)	622 (18.0)	69 (2.0)	12 (0.3)	1,235 (35.8)	255 (7.4)
초상권 침해	59 (100)	11 (18.6)	3 (5.1)	11 (18.6)	16 (27.1)		15 (25.4)	3 (5.1)
음성권 침해	2 (100)						2 (100)	
성명권 침해	19 (100)	2 (10.5)		10 (52.6)			5 (26.3)	2 (10.5)
사생활 침해	6 (100)	1 (16.7)		1 (16.7)			2 (33.3)	2 (33.3)
재산상 손해	18 (100)		2 (11.1)	1 (5.6)	3 (16.7)		2 (11.1)	10 (55.6)
기 타	7 (100)	4 (57.1)					3 (42.9)	
계	3,562 (100)	1,081 (30.3)	200 (5.6)	645 (18.1)	88 (2.5)	12 (0.3)	1,264 (35.5)	272 (7.6)

\* ( ) 안의 숫자는 %

#### 사 례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G언론사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모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하여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이름만 유사할 뿐 해당 인물과 무관함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 측이 조정심리 전 사진을 삭제하고 이름을 수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심리 중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 례 | 음성권 침해

H언론사는 모 개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병원 직원인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방송에 사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몰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해당 보도가 인터넷에서 시청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하였다.

##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청구한 2,091건 중 868건(41.5%)이 당사자 간 화해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고, 564건(27.0%)이 조정성립, 350건(16.7%)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비율은 국가기관(58.8%), 지자체(46.0%), 일반단체(36.3%), 공공단체 및 교육기관(각 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국가기관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조정불성립률은 공공단체(38.8%), 언론사(31.1%), 교육기관(2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가 신청한 사건의 조정불성립률은 작년도(63.4%)에 비하여 절반가량으로 대폭 낮아졌다.

표 19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개 인	2,091 (100)	564 (27.0)	96 (4.6)	350 (16.7)	56 (2.7)	9 (0.4)	868 (41.5)	148 (7.1)
국가기관	68 (100)	40 (58.8)	7 (10.3)	9 (13.2)			11 (16.2)	1 (1.5)
지자체	137 (100)	63 (46.0)	8 (5.8)	16 (11.7)			39 (28.5)	11 (8.0)
공공단체	103 (100)	33 (32.0)	10 (9.7)	40 (38.8)			14 (13.6)	6 (5.8)
일반단체	499 (100)	181 (36.3)	25 (5.0)	99 (19.8)	19 (3.8)	2 (0.4)	107 (21.4)	66 (13.2)
종교단체	86 (100)	19 (22.1)	8 (9.3)	14 (16.3)	7 (8.1)		37 (43.0)	1 (1.2)
기업체	442 (100)	139 (31.4)	29 (6.6)	80 (18.1)	2 (0.5)	1 (0.2)	154 (34.8)	37 (8.4)
언론사	61 (100)	18 (29.5)	10 (16.4)	19 (31.1)	4 (6.6)		10 (16.4)	
교육기관	75 (100)	24 (32.0)	7 (9.3)	18 (24.0)			24 (32.0)	2 (2.7)
계	3,562 (100)	1,081 (30.3)	200 (5.6)	645 (18.1)	88 (2.5)	12 (0.3)	1,264 (35.5)	272 (7.6)

\* ( ) 안의 숫자는 %

##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전체 조정사건(3,562건)의 72.4%에 해당하는 2,580건을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가 처리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690건(26.7%)이 조정성립되었고, 474건(18.4%)은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조정청구를 취하한 사건은 1,159건이며, 이 중에 966건은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간 협의로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지거나 화해한 사건이다. 취하한 사건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7.6%, 총 982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391건(39.8%)이 조정성립, 171건(17.4%)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취하 사건 중 79.1%는 조정신청 후 피해구제된 것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서울중재부가 175건(서울중재부 전체 조정사건 중 6.8%), 지역중재부가 25건(지역중재부 전체 조정사건 중 2.5%)으로 서울중재부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20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서울		2,580 (100)	690 (26.7)	175 (6.8)	474 (18.4)	72 (2.8)	10 (0.4)	966 (37.4)	193 (7.5)
부산		71 (100)	25 (35.2)		9 (12.7)			37 (52.1)	
대구		118 (100)	57 (48.3)		30 (25.4)			24 (20.3)	7 (5.9)
광주		113 (100)	43 (38.1)		21 (18.6)	8 (7.1)	2 (1.8)	25 (22.1)	14 (12.4)
대전		78 (100)	38 (48.7)	2 (2.6)	5 (6.4)	1 (1.3)		20 (25.6)	12 (15.4)
경기		275 (100)	109 (39.6)	6 (2.2)	52 (18.9)			93 (33.8)	15 (5.5)
강원		19 (100)	9 (47.4)		4 (21.1)			6 (31.6)	
충북		75 (100)	23 (30.7)	2 (2.7)	20 (26.7)			19 (25.3)	11 (14.7)
전북		94 (100)	17 (18.1)	7 (7.4)	5 (5.3)			63 (67.0)	2 (2.1)
경남		89 (100)	49 (55.1)	8 (9.0)	12 (13.5)	6 (6.7)		8 (9.0)	6 (6.7)
제주		50 (100)	21 (42.0)		13 (26.0)	1 (2.0)		3 (6.0)	12 (24.0)
계		3,562 (100)	1,081 (30.3)	200 (5.6)	645 (18.1)	88 (2.5)	12 (0.3)	1,264 (35.5)	272 (7.6)

\* ( ) 안의 숫자는 %

## 7.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언론환경은 새로운 양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신생 미디어들의 등장과 더불어 기사의 빠른 확산 및 전파로 인해 침해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 이래,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구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사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합의내용에 담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전체 조정사건(3,562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2,471건을 살펴보면, '기사 열람·검색 차단'으로 피해구제된 건수는 674건으로 27.3%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2,562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1,816건을 살펴보면,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조정사건은 578건으로, 3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 '기사열람·검색 차단'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인격권 침해 또는 중대하고 현저한 명예훼손이 있거나, 기사의 주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환경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인격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실무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된 매체 환경 변화에 맞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 례 | 기사열람검색 차단 사례 1

K언론사는 사내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원을 노출,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심리결과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이 보호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사열람검색차단과 더불어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 례 | 기사열람검색 차단 사례 2

L언론사는 교육공무원인 신청인의 학생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내 비리를 제보한 신청인을 성(性) 추행범으로 몰아가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학교 측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보도에 실명이 거론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기사열람검색 차단과 함께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제 4 절

##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 중심의 조정과는 달리, 법원의 재판과 유사하게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사안의 성격,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중재에 적합한 사안의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해왔으나 중재제도의 도입 이후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가 미진하였다.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중재제도가 분쟁 발생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사전에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등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중재사건 청구건수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재 청구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1건, 2018년 2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중재신청의 상당수가 언론의 보도내용을 단순 매개한 포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 결과가 포털에 그대로 반영되는 추세여서 포털 대상 사건수 자체가 감소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중재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중재사건은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전 협의과정에서 중국적으로 중재부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중재로 전환한 경우다. 이 사건은 중재부의 중재결정 이전에 당사자 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민·형사 부제소를 약속하는 내용의 화해서가 제출되어, 중재화해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 제 5 절 평 가

2018년 위원회는 총 3,56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다수매체를 상대로 한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3,319건, 2016년 3,170건, 2017년 3,230건, 2018년 3,562건으로 4년 연속 3천 건 이상을 처리하였다. 2018년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1.4%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신청인 80.3점, 피신청인 73.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된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는 등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위원회의 조정사건 접수·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처리한 조정사건 3,562건 중 2,562건(71.9%)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관한 조정사건은 2016년 62.8%, 2017년 69.9%, 2018년 71.9%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피해 사례 관련 구제방법은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나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등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사례나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에 대하여도 조정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열람이나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상의 새로운 피해양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피해구제보도문(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작성 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피해 구제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2018년 조정신청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21일로 전년도 평균 처리기간 약 22일에 비해 1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2년 서울에 1개 중재부가 증설된 후 2013년 한 해 처리기간이 약 14일로 단축되었으나, 이후 매년 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사건이 계속 증가하여 2014년부터 법정 사건처리

기간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매체의 확산에 따라 유사 보도에 의한 다매체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병행심리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규정된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심리지연을 방지하는 등 인력과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대화와 양보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상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에 걸맞은 언론 피해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 제 2 장

# 시정권고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보도가 법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고지하여 향후 유사한 법익 침해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포함한 여러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위원회는 2018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성 보도를 시정권고 대상에 포섭하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을 7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폭넓게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개정하였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제4조제2항)을 보완하고,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다.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심의기준 제10조(보도윤리)제2항을 신설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10조(보도 윤리)**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17년 2,192개 매체보다 200개 증가한 총 2,392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하였다. 2018년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275건으로 전년도(1,034건) 대비 241건이 증가하였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보도’,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보도’, ‘사생활 침해 보도’ 순으로 시정권고 결정이 많았고,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86.4%로, 전년도 84.9%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매체의 경우, 일간지, 뉴스통신, 방송의 시정권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주간지, 월간지는 감소했다.

## 3. 침해 유형별 분석

2018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건이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85건(22.4%), ‘사생활 침해’가 230건(1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살 관련 보도’는 전년도 84건에서 28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언론사가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법익 침해 요소가 많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의 경우,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SNS를 통한 피해사실 폭로가 이어지면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선정적인 메신저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도하거나,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법익침해 보도가 양산되어 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전년도 27건에서 28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생활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총 230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유명인의 가족 또는 종교에 대한 보도, 유명인이 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는 보도 등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한 사례가 많았다.

그 외에 ‘기사형 광고’ 136건(10.7%), ‘피의자,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한 보도’ 108건(8.5%),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한 보도’ 73건(5.7%),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보도’ 54건(4.2%)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표 21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신원 공개	고소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변형 수법 등 묘사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음란 포악 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2016	912 (100)	134 (14.7)		43 (4.7)	4 (0.4)	262 (28.7)	20 (2.2)		4 (0.4)	75 (8.2)		4 (0.4)	22 (2.4)	5 (0.5)	124 (13.6)	28 (3.1)		14 (1.5)	173 (19.0)
2017	1,034 (100)	217 (21)	4 (0.4)	280 (27.1)	70 (6.8)			27 (2.6)	5 (0.5)	2 (0.2)	3 (0.3)	57 (5.5)	2 (0.2)	1 (0.1)	84 (8.1)	13 (1.3)	1 (0.1)	70 (6.8)	198 (19.1)
2018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 ( ) 안의 숫자는 %

### 가. 사생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유형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6년 134건, 2017년 217건, 2018년 2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 배우, 운동선수 등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명인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사건·사고 보도에서 피해자의 초상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 사례로는 유명 가수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공개한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아래 [사례 1] 참조). 위원회는 당사자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마약 투약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녀의 사진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다(아래 [사례 2] 참조). 위원회는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 례 1 | 사생활 침해



-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자녀의 초상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 원 보도에는 당사자와 자녀의 초상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사 례 2 | 사생활 침해



- 유명인이 종교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녹취한 음성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 원 보도에는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 나.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정 건수는 총 108건으로 운동선수의 성폭행 혐의 보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피의자 신원 공개 보도, 연예인의 소위 '빚투' 사건 보도 등이 대다수였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을 받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보도가 많았다.

대표 사례로는 위에서 언급한 현직 운동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보도가 있었다. 위원회는 비록 피의자가 유명인에 속한다 할지라도 공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 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54개 보도,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을 묘사한 285개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2018년에는 특히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지속됨에 따라 관련 기사가 대량 보도되었는데, 위원회는 언론이 공개한 정보가 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정보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시정권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등을 포함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도 매우 많았다. 이는 '미투 운동'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 글 전문을 공개하거나 가해자의 가해수법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를 밝히는 미투 보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을 통해 피해자를 부각 시킨 보도가 있었다(아래 [사례 3] 참조). 위원회는 이러한 기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당사자 간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었다(아래 [사례 4] 참조). 위원회는 이러한 기사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례 3 |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뉴스 > 연예 > 종합 ▾

성추행 정황 폭로한 [ ] 은 누구?...올해 [ ] 과 졸업→ [ ] 데뷔

[ ] 2018년 02월 21일 수요일

성추행 정황 폭로한 [ ] 은 누구?...올해 [ ] 과 졸업→ [ ] 데뷔

배우 [ ]의 성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 ]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 ]은 [ ] 학교 [ ]학번으로 올해 [ ]세다. 그는 올해 [ ]대학교 [ ]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 ]에 데뷔한 신인 연극 배우다.

▲ 자료사진

–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 보도하고 신원을 공개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사 례 4 |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 [ ] Q ≡ ← [ ] Q ≡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 ] 남친은 좋겠네요 오전 3:52

[ ] 안좋아한다니까요 ㅋㅋㅋㅋㅋ 오전 4:03

[ ] 보보도 안하는 플라토닉입니다 오전 3:53

[ ] 네에..... 오전 4:03

[ ] 그럼 xx씨라도 그 [ ] 어찌해야지? 오전 3:53

[ ] 지금 난 혼자 너무 많은 상상 속에...너무 많이 [ ] 무시 위험 오전 3:53

[ ] 보고싶어요 오전 4:00

[ ] 너무 [ ] 찢어요 오전 4:01

[ ] 아 뭘 어쩌라는거지; 오전 4:02

[ ] 당신도 [ ] 되죠 오전 4:02

[ ] 지금 [ ] 있죠? 오전 4:03

아니요

2015년 8월 미국을 다녀왔다는 [ ]는 28일 오후 피해자에게 와인, 사진, 자신의 작업실 등 여러 화제를 꺼내며 대화를 건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 카톡을 이어가다가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보관하다 제공한 과거 카톡 대화 텍스트를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는 가해자의 성명 문제되는 내용 등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 라. 자살 관련 보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287건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전년도 84건에 비해 약 3.4배 늘어난 것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유명 가수, 정치인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언론사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아래 [사례 5] 참조). 위원회는 자살자가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여서 해당 사건이 일반 대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자살 도구가 평상시에 쉽게 접하거나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 모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 사 례 5 | 자살 관련 보도

## 유명 아이돌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

### 가족에 자살 암시 문자보내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27·본명 김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2분께 종현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망 20여 분 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 ] 쓰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를 곧바로 건국대 병원에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망 이틀 전 친누나에게 “이제까지 힘들었다”는 내용을



답은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종현은 사망 당일 오후 4시 42분께에도 친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보낸 문자에는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며 “마지막 인사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종현은 이날 정오께 2박으로 해당 레지던스를 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현은 2005년 청소년 가요제를 통해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됐으며 2008년 5월 25일 소속 그룹인 샤이니로 데뷔했다. 2015년 1월 12일엔 솔로 데뷔 앨범 ‘BASE’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4년 2월부터 MBC 심야 라디오 ‘푸른 밤 종현입니다’를 진행해 이듬해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제3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는 음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종현은 청운대학교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명지대학교에서 영화·뮤지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현재 동대학 같은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종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박재영 기자

— 원 보도내용에는 자살 방법 및 도구가 공개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마. 충격·혐오감

위원회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73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잔인하거나 비참한 내용을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였다.

사 례 6 | 충격·혐오감을 주는 보도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전략) 지난 21일(현지 시간) 동영상 공유 사이트 ‘Pear video’에는 일본의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개최한 회식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회장은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20대 직원들에게 매우 무리한 요구를 했다. 회장은 직원들에게 “얼굴을 넣으라”는 지시와 함께 손가락으로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냄비를 가리켰다. (중략) 회장은 옆에 있던 한 남성 직원의 얼굴을 냄비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하 생략)



pearvideo

-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한 보도
- 원 보도내용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바. 기사형 광고

2018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총 136건이었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의 권위와 신뢰성을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여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기자의 바이라인, 의료기관 주소, 전경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게재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 7 | 기사형 광고

현재위치 : 홈 > 뉴스 > 웰스플러스 > 메디컬

**[ ] , 분당 [ ] 에 11번째 지점 개원**

피코레이저 토닝-슈링크 등 레이저기기 보유 ... 필라보독스 등 뿌띠기술 제공

입력 2018-04-06 09:54 수정 2018-04-06 10:00



글로벌리뷰 분당점

전국 10개, 강남역 인근에 3개의 피부과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 ] 은 지난 4월 경기도 분당에 11호점을 개원했다.

[ ] 측은 분당 상권의 중심으로 피부과·성형외과를 비롯해 일반 진료과목 병원이 집중돼 대규모 메디컬 타운이 조성된 지역이다. [ ] 4층에 자리잡은 [ ] 분당점은 10호점인 인천점에 이어 경기 [ ] 피부 뿌띠 성형 클리닉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 ] 분당점 대표원장은 "신분당선 개통으로 분당, 용인 수지, 판교 등에 거주하는 환자의 강남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피부과 뿌띠성형 등 시술을 받으러 강남까지 가기엔 부담이 컸다"며 "다년간 강남 피부과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분당점에서도 [ ] 의 표준화된 시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원 보도내용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 4. 매체 유형별 분석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인터넷 신문 1,102건(86.4%), 일간지 90건(7.0%), 뉴스통신 62건(4.9%), 방송 18건(1.4%), 주간지 2건(0.2%), 월간지 1건(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와 비중은 2017년도 878건(84.9%)보다 증가했다. 그 외 매체의 경우, 일간지, 뉴스통신, 방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주간지, 월간지는 감소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시정권고 건수가 1,164건(91.3%)인데 반해 일간지, 주간지, 방송 등 전통매체의 건수는 111건(8.7%)에 머물러 대다수의 법익침해 보도가 온라인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6년 698건(76.5%), 2017년 878건(84.9%)으로 시정권고 건수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크게 위원회 내·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록건수가 8,000여 개에 달하고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보도의 제작, 전파와 복제가 지면에 비해 손쉽고 신속하며 매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보도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시정권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6. 1. 1. ~ 2018.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6	912 (100)	54 (5.9)	63 (6.9)	8 (0.9)	3 (0.3)	69 (7.6)	698 (76.5)	17 (1.9)
2017	1,034 (100)	41 (4.0)	41 (4.0)	12 (1.2)	2 (0.2)	47 (4.5)	878 (84.9)	13 (1.3)
2018	1,275 (100)	38 (3.0)	52 (4.0)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 ( ) 안의 숫자는 %

## 제 3 절 평 가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년도(1,034건)보다 23.3% 증가한 1,27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5년까지 연 500건 이하에 머물렀던 시정권고 건수는 2016년 912건, 2017년에는 1,034건 이상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시정권고 건수 증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2018년도 시정권고 건수 중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약 91%에 달한 반면 종이신문, 방송 등 전통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약 9%에 머물러 대다수의 법익침해 보도가 온라인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매체 간 경쟁 심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85건(22.4%)가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 230건(18.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보도'는 전년도 27건에서 약 10.6배 증가하였다. 이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전개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개정하였다.

사회적 법익 침해에서는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사형 광고'가 136건(1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위원회는 유명 가수, 전직 국회의원 등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다량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이렇듯 공인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 다수 언론사에서 이를 다루고 경쟁적으로 기사를 내어 시정권고 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시정권고 건수는 적으나 사회적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정권고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전직 고위 공직자 방북 오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는데,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보도윤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이러한 보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제10조(보도 윤리)를 보완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심의기준을 정비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정권고 심의원 증원, 심의대상 매체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사회적 변화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각종 법익 침해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 3 장

# 선거기사심의

### 제 1 절 개 요

####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비롯하여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선심위는 비상설기구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재·보궐선거는 통상 연 1회 실시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없는 때에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며,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의 선거 기사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해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표 2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심의위원장	안영률	법무법인 KCL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바른미래당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실무부서 및 선거기사 심의원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가운데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하여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사항을 의결한 후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선거일 2018년 6월 13일)는 2018년 2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설치·운영되었다. 선심위는 151일간 운영되어 자체심의 91건, 시정요구심의 12건 등 총 10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회의】

## 가. 자체심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104건의 기사를 자체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중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규정을 위반한 91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

의결결과를 살펴보면 주의가 39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8건(41.8%), 권고 10건(11.0%), 주의사실 게재 3건(3.3%), 경고결정문 게재 1건(1.1%)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7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보자 기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0건(11.0%),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기준 위반 5건(5.5%), 광고 제한 규정 위반 4건(4.4%), 여론조사보도 관련 기준 위반 4건(4.4%)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56건(61.5%), 지역주간지 29건(31.9%), 중앙일간지 4건(4.4%), 종합주간지 2건(2.2%)으로 나타났다.

**표 2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8. 2. 12.~2018. 7. 13.)

간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 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4	3			1			1	1	2	
	지역	56	41	3	3	7	2	1	2	22	28	3
주간지	종합	2		2						1	1	
	지역	29	24		1	2	2		1	14	9	5
월간지												
뉴스통신												
계	91 (100.0)	68 (74.7)	5 (5.5)	4 (4.4)	10 (11.0)	4 (4.4)	1 (1.1)	3 (3.3)	38 (41.8)	39 (42.9)	10 (11.0)	

\* ( )안의 숫자는 %

**나. 시정요구심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12건의 후보자 시정요구를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 반론보도문 게재 2건(16.7%), 주의사실 게재 1건(8.3%), 경고 3건(25.0%)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시정요구 접수 안건 중 2건(16.7%)은 취하되었고, 4건(33.3%)은 기각되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주간지가 7건(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일간지 3건(25.0%), 종합주간지 1건(8.3%), 뉴스통신 1건(8.3%)이었다.

**표 25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2018. 2. 12.~2018. 7. 13.)

간별	계	처 리 결 과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일간지	중앙									
	지역	3	1		1	1				
주간지	종합	1							1	
	지역	7	1			2			1	3
월간지										
뉴스통신	1									1
계	12 (100.0)	0 (0.0)	2 (16.7)	0 (0.0)	1 (8.3)	3 (25.0)	0 (0.0)	0 (0.0)	2 (16.7)	4 (33.3)

\* ( )안의 숫자는 %

사 례 1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사례)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 경주시청 시회가 27일 오후 6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주시청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수지역당원 후보자에게 인신공격을 저질렀다. 인신공격을 저질렀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인신공격을 저질렀던 후보자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시민 A씨 주예비후보 배우자 등 4명 부동산 다은 계약의혹 검찰 진정 22억원 이상 건물 원가에도 못 미치는 18억7천5백만원에 팔았다(?) 주낙영의 배후, 정승 1천만원 당 공사가 30대7십이만에 팔았다(?)

지방선거 사상 시민이 선거 출마자를 검찰에 진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2018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하는 경주시청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수지역당원 후보자를 상대로 다수의 다수지역당원 후보자에게 인신공격을 저질렀다.

배우자한테 이혼했는데 이혼도 6개월만 18억7천5백만원에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 다는 것이다. 당시 주낙영씨는 팔던 1층짜리 아파트로 시가 30억 상당이었다.

또 배우자가 토착계급과해서 도저히 상상적으로 남자가 안되는 부동산은 주 낙영이 팔던 상가에서 인신공격을 이 낡은 방을 왜 공사가까지 넘겼다는 얘기를 제기했다.

이날 진정서에 따르면 주낙영 후보 배우자가 2018년 1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배우자한테 이혼했는데 이혼도 6개월만 18억7천5백만원에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 다는 것이다. 당시 주낙영씨는 팔던 1층짜리 아파트로 시가 30억 상당이었다.

이날 진정서에 따르면 주낙영 후보 배우자가 2018년 1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배우자한테 이혼했는데 이혼도 6개월만 18억7천5백만원에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 다는 것이다. 당시 주낙영씨는 팔던 1층짜리 아파트로 시가 30억 상당이었다.

- ▶ 경북일일신문은 특정 예비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1면에 5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게재하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사 례 2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사례)



- ▶ 담양뉴스는 선거에 재출마예정인 현직 군수의 성과와 출마 입장 등을 3주에 걸쳐 부각 보도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국회의원  
(12)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 제3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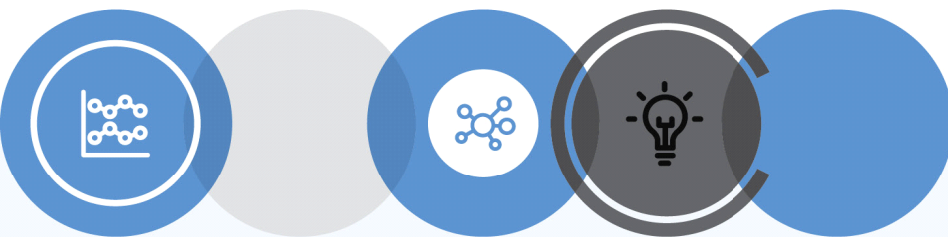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에 명문화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심의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려 지면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반대로 심의기준을 크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로서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심의2팀은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업무 협의회에 참석해 제7회 지방선거 선심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심의위원 자격 요건 강화, 시정요구 신청 주체 확대, 여론조사관련 심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469개 매체를 심의해 자체심의 91건, 시정요구심의 12건을 의결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자체심의 206건, 시정요구 18건)와 비교하면 의결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미투(me too)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사회 이슈가 잇따르면서 선거관련 사안이 부각되지 못하였고, 2016년부터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심의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위반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심위 운영과 관련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선심위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의 공백 문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결산좌담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연말연시 지역신문들이 현직 후보 홍보성 기사를 대거 양산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위 설치 이전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 선심위 비설치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후보자 시정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선심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전 선심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선거기사 심의규정 적용의 일관성 확보 문제, 심의위원의 노하우 축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선심위 상설화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부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 제 1 장

## 언론피해 상담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언론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상담을 받은 민원인이 조정신청을 할 경우 조정신청서 작성과 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고 쉽게 상담부터 조정신청 접수까지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전화나 방문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실시간 채팅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3,396건의 상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04년 상담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언론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상담 및 접수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피해 확산의 방지를 원하는 신청인을 위해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청취지 예문'을 만들어 기사열람·검색 차단, 펌글로 인한 피해구제,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 대한 유형별 신청취지 예시를 제공하였다.



【언론피해 상담 모습】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상담신청 유형

2018년 전체 상담 건수는 3,396건으로 2017년 2,965건에 비해 431건(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상담이 2,672건(7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신문고 233건(6.9%), 방문 209건(6.2%), 인터넷 실시간 146건(4.3%), 인터넷 게시판 94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실시간을 통한 상담신청이 2018년 146건으로 2017년 47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였고, 방문을 통한 상담은 2018년 209건으로 2017년 144건에 비해 65건 증가하였다.

표 26 | 상담신청 유형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17	2,965 (100)	2,347 (79.2)	144 (4.9)	47 (1.6)	80 (2.7)	75 (2.5)	259 (8.7)	13 (0.4)
2018	3,396 (100)	2,672 (78.7)	209 (6.2)	146 (4.3)	94 (2.8)	31 (0.9)	233 (6.9)	11 (0.3)

※ ( ) 안의 숫자는 %

※ 2016년 5월부터 '기타'에 포함되었던 '국민신문고'를 분리해 집계

## 2. 상담 처리결과

2018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3,244건(6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상담 예정 661건(14.1%), 타기관 안내 463건(9.9%), 법적절차 안내 215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처리결과는 전년과 비교하여 상담건수가 증가한 만큼 전체적으로 건수가 소폭 늘었으나, 유형별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제3자의 보도 불만 제기 등의 '타기관 안내' 상담 비중은 지난 3년간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위원회를 대표적인 언론 관련 고충처리기관으로 인식하여 문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7 | 상담 처리결과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처리결과 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2016	2,780	3,639 (100)	2,464 (67.7)	128 (3.5)	526 (14.5)	393 (10.8)	99 (2.7)	29 (0.8)
2017	2,965	4,066 (100)	2,821 (69.4)	193 (4.7)	522 (12.8)	461 (11.3)	28 (0.7)	41 (1.0)
2018	3,396	4,677 (100)	3,244 (69.4)	215 (4.6)	661 (14.1)	463 (9.9)	63 (1.3)	31 (0.7)

※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체종결 및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신청해 온 피해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이 2,904건(85.5%)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225건(6.6%), ‘재산상 손해’ 47건(1.4%), ‘사생활 침해’ 38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피해 유형 중 사생활 침해나 재산상 손해의 비중은 미약하나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표 28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6	2,780 (100)	2,198 (79.1)	195 (7.0)	65 (2.3)	54 (1.9)	268 (9.6)
2017	2,965 (100)	2,471 (83.3)	185 (6.2)	40 (1.3)	43 (1.5)	226 (7.6)
2018	3,396 (100)	2,904 (85.5)	225 (6.6)	38 (1.1)	47 (1.4)	182 (5.4)

※ ( ) 안의 숫자는 %

### 4. 상담매체 유형

2018년 상담 대상 매체는 인터넷 신문이 1,846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송 568건(12.9%), 일간신문 397건(9.0%), 인터넷뉴스서비스 359건(8.2%), 뉴스통신 224건(5.1%), 주간신문 167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55.4%를 차지하여 전체 매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매체로 분류하고 있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 유사미디어에 대한 법적 지위와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29 | 상담매체 유형

(2016. 1. 1. ~ 2018. 12. 31.)

연도	상담 건수	구분 매체 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16	2,780	3,821 (100)	471 (12.3)	182 (4.8)	754 (19.7)	11 (0.3)	215 (5.6)	1,223 (32.0)	1 (0.0)	278 (7.3)	16 (0.4)	670 (17.5)
2017	2,965	3,848 (100)	408 (10.6)	115 (3.0)	549 (14.3)	17 (0.4)	213 (5.5)	1,389 (36.1)		283 (7.3)	56 (1.5)	818 (21.3)
2018	3,396	4,391 (100)	397 (9.0)	167 (3.8)	568 (12.9)	21 (0.5)	224 (5.1)	1,846 (42.0)	4 (0.1)	359 (8.2)	58 (1.3)	747 (17.0)

※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상담신청인 유형

2018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 2,284건(67.3%), 회사 400건(11.8%), 일반단체 316건(9.3%),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2건(5.9%), 국가기관 93건(2.7%), 교육기관 54건(1.6%), 종교단체 47건(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개인의 상담 비중이 소폭 낮아졌으며, 일반단체와 국가기관의 상담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30 | 상담신청인 유형

(2016. 1. 1. ~ 2018. 12. 31.)

연도	상담 건수	구분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6	2,780 (100)		1,856 (66.8)	72 (2.6)	244 (8.8)	336 (12.1)	50 (1.8)	54 (1.9)	168 (6.0)
2017	2,965 (100)		2,096 (70.7)	57 (1.9)	218 (7.4)	336 (11.3)	66 (2.2)	30 (1.0)	162 (5.5)
2018	3,396 (100)		2,284 (67.3)	93 (2.7)	316 (9.3)	400 (11.8)	54 (1.6)	47 (1.4)	202 (5.9)

※ ( ) 안의 숫자는 %

## 6. 상담대상 유형

2018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대상 유형은 원기사 3,280건(77.3%), 매개기사 662건(15.6%), 복제기사 130건(3.1%), 유사미디어 54건(1.3%), 댓글 34건(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원기사는 2018년 3,280건으로 2017년 2,769건에 비해 511건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매개기사는 2018년 662건으로 2017년 709건에 비해 47건이, 복제기사는 2018년 130건으로 2017년 206건에 비해 76건이 각각 감소하였다.

**표 31 | 상담대상 유형**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대상 건수	상 담 대 상					
			원기사	매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기타
2016	2,780	3,166 (100)	2,550 (80.5)	215 (6.8)	80 (2.5)	90 (2.8)	29 (0.9)	202 (6.4)
2017	2,965	3,965 (100)	2,769 (69.8)	709 (17.9)	65 (1.6)	206 (5.2)	54 (1.4)	162 (4.1)
2018	3,396	4,243 (100)	3,280 (77.3)	662 (15.6)	34 (0.8)	130 (3.1)	54 (1.3)	83 (2.0)

- ※ ( ) 안의 숫자는 %
- ※ '유사미디어' 항목은 2016년 5월부터 집계
- ※ 상담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상담내용 유형

2018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은 2,896건 (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 1,671건(30.3%),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 617건(11.2%), 추후보도 95건(1.7%), 형사고소 54건(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 | 상담내용 유형**

(2016. 1. 1. ~ 2018.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내용 건수	상 담 내 용 유 형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기사열람· 검색 차단 등	강제 집행절차	형사 고소	기타
2016	2,780	3,969 (100)	2,054 (51.8)	99 (2.5)	1,030 (26.0)	30 (0.8)	322 (8.1)	5 (0.1)	134 (3.4)	295 (7.4)
2017	2,965	4,692 (100)	2,384 (50.8)	110 (2.3)	1,337 (28.5)	14 (0.3)	489 (10.4)	2 (0.0)	92 (2.0)	264 (5.6)
2018	3,396	5,512 (100)	2,896 (52.5)	95 (1.7)	1,671 (30.3)	25 (0.5)	617 (11.2)	5 (0.1)	54 (1.0)	149 (2.7)

- ※ ( ) 안의 숫자는 %
- ※ 상담내용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2016년 4월부터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에 '복제기사·댓글 삭제' 포함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에 대한 상담은 2016년 322건, 2017년 489건, 2018년 6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누구라도 언제든지 기사를 검색하고 복제하여 전파할 수 있어, 상담신청인들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정이나 반론과 같은 피해구제보도와 함께 문제가 된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 차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 3 절 평 가

2018년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의 경청자세는 87.6점, 상담원의 친절성은 87.5점, 적극적인 상담은 86.9점, 신속한 상담은 85.7점, 상담내용의 신뢰성은 85.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문제해결에 도움은 8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상담이용자가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등 요구하는 민원이 위원회 조정중재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조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에 있어 사용언어, 양식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예문을 신청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에는 상담매체 중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한 상담이 절반을 넘어섰고, 그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가 증가하고 뉴스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사 형식의 글이 유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미디어에 대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기사열람·검색 차단과 같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에 대한 연구 및 법제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제 2 장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 제 1 절 개 요

우리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분쟁해결 전문연수>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운영, 대국민 교육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전국 공무원, 기업 임직원, 법조인, 언론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소속 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해 언론피해 예방 방안 및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총 217회 실시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수요층 개발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매년 연간 교육 신청 및 실시 건수가 200건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실시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역시 자유학기제 실시,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 전국 인터넷 학부모 모임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실시 횟수는 총 129회였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수강하는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 및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청소년의 연령과 학습 능력 등을 고려, 언론사 및 심리실 견학, 도전 골든벨 등의 참여학습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 실시한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은 위원회 교육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신규 과정으로 대체, 운영하였다. 또한 야간에 진행되는 일반인 연수를 개설하여 주간 교육 과정 참여가 어려운 일반인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인터넷신문 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언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3 | 2018년도 교육 실시현황

(2018. 1. 1. ~ 12. 31.)

구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분쟁해결 전문연수	계
언론인	29		4	33
공무원 등	133		14	147
(예비)법조인	3		7	10
기업 임직원	10		5	15
학생	42	129	7	178
일반인			3	3
기타				
계	217	129	40	386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18년 위원회는 총 217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수강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33회, 학생 42회, 언론인 29회, 기업 임직원 10회, (예비)법조인 3회 순이었다. 예년에 비해 공무원, 학생 등의 교육신청이 다소 저조했음에도 총 교육 횟수는 200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은 횟수 및 교육인원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표 34 | 최근 3년간 &lt;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gt; 실시현황

(2018. 1. 1. ~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공무원 등	(예비) 법조인	기업 임직원	학생	계
2016		38 (1,250)	167 (10,723)	4 (47)	8 (160)	46 (2,335)	263 (14,515)
2017		26 (616)	161 (7,758)	4 (221)	6 (139)	54 (2,424)	251 (11,158)
2018		29 (621)	133 (7,730)	3 (235)	10 (351)	42 (2,006)	217 (10,943)

※( )의 숫자는 교육인원

##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민주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배워나가는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인격권 관련 소양과 역량을 높이는 한편, 언론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전국 각 지역에서 총 129회 실시,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131회)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으며, 교육 수강 인원은 역대 최대인 2,323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특히 지역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에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과정을 지속 개설해 지역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해 2018년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 횟수는 총 60회로 작년 진행된 51회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제주 지역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경우 강의실 무료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고르라 제주'의 강의실을 대관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분쟁해결 전문연수>

위원회는 <분쟁해결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언론인, 법조인, 대학생, 일반인, 교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언론인 워크숍, (예비)법조인 연수, 홍보담당자 대상 과정 등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위원회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 운영해온 연수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적용해 성과를 거두었다. 일례로 교육 이용자의 니즈와 의견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구성과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수의 연수과정이 조기 신청 마감되었고, 기업이나 기관의 위기관리 및 보도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홍보업무 담당자를 위한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 과정’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 서울에서만 개설됐던 변호사 연수를 2018년에는 부산·광주까지 확대해 지역 교육 기회를 늘렸고, 교육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조정실무 관련 강의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수강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 가. 지역 언론인 워크숍

2018년 위원회는 언론인을 위한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 언론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신문위원회·한국기자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지역 언론사와 군소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 및 기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지역언론인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위원회 피해구제절차 안내, 6.13. 지방선거 보도를 활용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안내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아울러 구글 북(Books), 구글 트렌드(Trends) 등 구글 툴(Tools) 활용법과 데이터 리서치를 활용한 기사 작성법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였다.

####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 ~ 11. 2.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28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29. ~ 11. 30.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17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 나. 법조인 대상

### 1) 변호사 연수

위원회는 2017년부터 변호사를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승인 후 진행되는 연수교육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8년 총 5회의 변호사 연수를 실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 1회씩 연수를 진행하였다.

####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인원	비고
제1차 변호사 연수	4. 20.	30명	서울
제2차 변호사 연수	6. 22.	18명	서울
제3차 변호사 연수	9. 7.	23명	서울
제4차 변호사 연수	11. 9.	25명	부산
제5차 변호사 연수	12. 14.	12명	광주

### 2) 예비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 매 1회씩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법조인 연수는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이 언론분쟁 및 언론조정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언론법제와 분쟁조정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적 강의, 조정심리 참관, 모의 조정 및 모의토론회 등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부터는 교육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2주 과정의 예비법조인 연수를 1주 과정으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1. 29. ~ 2. 9.	1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30명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8. 6. ~ 8. 17.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6명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다. 홍보담당자 대상

1)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홍보과정)은 기업 또는 기관의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언론홍보 방안 습득, 오보 등과 관련한 대(對) 언론 대응능력 향상 및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위원회는 2018년부터 홍보과정의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언론 홍보 및 언론분쟁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실시하였다.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 실시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3. 21.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 경찰	30명
제2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11.	서울지방경찰청 공보담당 경찰	34명
제3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9. 20.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등	18명
제4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26.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등	20명

2)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은 기업이나 기관의 위기관리 및 보도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요청에 부응하고,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신설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위기관리 프로세스, 위기 대처 시나리오 개발법, 위기

발생 시 언론 및 SNS를 통한 대응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했으며, 기업 언론분쟁 대응 시 위원회를 활용했던 사례 등을 소개해 홍보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 실시현황 】**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	7. 5.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등	33명
제2차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	10. 11.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등	27명
제3차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	11. 22.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등	28명

**라.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2018년 언론 홍보전략 및 위기관리,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일반인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일반인 연수를 신설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언론 및 SNS를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과 언론 위기관리 전략, 언론분쟁 사례 및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주간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일반인의 특성을 반영해 야간 연수를 진행, 모든 과정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11. 27.	일반인	25명
제2차 일반인 연수	12. 4.	일반인	23명
제3차 일반인 연수	12. 11.	일반인	20명

**마.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2018년 7차례에 걸쳐 대학생 총 16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언론사 기자 등 언론인 출신을 강사로 초빙하여 ‘선배 언론인이 알려주는 언론현장과 취재방법’, ‘언론인의 자세 및 현장취재 노하우 습득’과 같은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언론인을 꿈꾸거나 언론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 학보사나 신문방송학과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형 교육을 5회(서울 4회, 부산·경남지역 1회) 실시해 전공과 소속이 다른 전국 학생들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생 연수 실시 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2. 2.	전국 대학생 등	20명
제2차 대학생 연수	2. 6.	성균관대학교 학보사 소속기자	20명
제3차 대학생 연수	2. 23.	전국 대학생 등	23명
제4차 대학생 연수	7. 13.	전국 대학생 등	26명
제5차 대학생 연수	8. 23.	전국 대학생 등	25명
제6차 대학생 연수	11. 2.	성균관대학교 학보사 소속기자	18명
제7차 대학생 연수	11. 21.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 등	39명

## 바. 교원 연수

위원회는 2018년 교사, 교육연구사, 전문상담사 등 교육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서울 4회, 부산 1회, 광주 1회)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 내 갈등 조정 기법, 오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등이었으며, 이를 실습(실제 사례를 통한 모의조정 실습 등)을 통해 수강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교원 연수 실시 현황】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인원	비고
제1차 교원 연수	1. 3. ~ 1. 5.	19명	서울
제2차 교원 연수	1. 10. ~ 1. 12.	11명	광주
제3차 교원 연수	1. 17. ~ 1. 19.	30명	서울
제4차 교원 연수	7. 30. ~ 8. 1.	14명	서울
제5차 교원 연수	8. 1. ~ 8. 3.	9명	부산
제6차 교원 연수	8. 8. ~ 8. 10.	24명	서울

## 사. 외국인 연수

2018년 위원회는 중국과 인도의 언론계 인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를 직접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언론분쟁조정 및 해결 등에 관한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국민의 신뢰와 부여된 의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적극 전달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외국인 연수 실시 현황 】**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외국인 연수	6. 20.	중국 언론계 인사	22명
제2차 외국인 연수	9. 12.	인도 언론계 인사	8명



**【 제2차 외국인 연수 】**

**아. 기관위탁 연수**

위원회는 기관위탁 연수를 통해 국방정신전력원의 군과 미디어 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기관위탁 연수 실시 현황 】**

(2018.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기관위탁 연수	2. 5.	국방정신전력원 공보전문과정 교육생	31명
제2차 기관위탁 연수	6. 12. / 6. 15.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00명
제3차 기관위탁 연수	6. 19.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57명
제4차 기관위탁 연수	6. 26.	국방정신전력원 공보전문과정 교육생	18명
제5차 기관위탁 연수	9. 19.	국방정신전력원 공보전문과정 교육생	27명
제6차 기관위탁 연수	10. 23.	국방정신전력원 정훈장교 교육생	15명

#### 4. 교육콘텐츠 개발

2018년 위원회는 대상별 교육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정사례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최신 언론계 동향, 관련 판례 등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여 교육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언론인, 공무원, 일반인, 청소년용 교육 PPT를 제작했다. 기존 PPT의 텍스트 기반 소개 내용을 교육대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청소년용 교육 PPT의 경우 홍보팀과 연계해 위원회 캐릭터 ‘어니’를 활용, 제작함으로써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를 완비하였다.

【교육대상별 PPT 4종】



둘째, 교육 대상별 맞춤형 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하고 교육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도전 골든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청소년에 특화된 강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교원연수에서는 학교 관련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조정을 실시했으며,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에서는 기업이 위원회의 조정심리에 참여했던 실제 언론분쟁 사례를 각색한 모의조정을 진행하여 현장감 있는 조정실습을 진행하였다.

셋째, 언론인, 법조인, 홍보 담당자, 군인 및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등 각 교육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17, 2018년 주요 위원회 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된 조정사례를 기반으로 콘텐츠 구성 및 내용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콘텐츠 회의를 진행했으며, 교육대상별 맞춤 사례 등을 업데이트하여 웹하드에 게시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언론관련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언론 관련 판결사건 중 주목할 만한 판례를 선별해 자료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시의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 제 3 절      평 가

2018년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실질화·내실화를 목표로 다채로운 교육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14,389명이 참여한 386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2018년 한 해 위원회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맞춤형 교육 사업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강사진 구성을 교육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하여 각종 연수 프로그램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2017년 서울에서만 개설·운영했던 변호사 연수를 부산, 광주 지역에서도 진행하는 등 지역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다. 아울러 교육생 의견을 반영하여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 중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으로 대체하고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가능한 연수 실시 한 달 전에는 과정을 개설하고 위원회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교육 이용자가 사전에 교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 대상별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용자별 특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인, 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등 각 대상별로 교육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정사례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최신 언론계 동향, 관련 판례 등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였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경우 그동안 만족도가 높았던 언론사 견학을 지속 실시했으며, 청소년들의 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강의자료를 발굴하고 퀴즈풀이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최신 언론 이슈 및

언론법제 현황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직 언론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판사, 변호사 등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외부 강사풀을 확대해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지역교육 및 지역사무소 교육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인터넷신문위원회와의 MOU 체결 이후, 매년 회원사 소속 언론인을 대상으로 합숙형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도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언론인 워크숍에서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선거기사심의 관련 내용뿐 아니라 구글 검색, 데이터 검색법 등 기사 작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를 포함시켜 언론인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 언론사, 각급 학교,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법무부 운영 솔로몬로파크(대전) 등 지역 소재 단체 및 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강의는 지역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변호사연수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도 지역사무소 협조 속에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방학 중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과정을 각 지역에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지역 거주 청소년들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며, 제주 지역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초등학생)의 경우 강의실 무료 대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도 위원회는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위원회는 교육 과정 및 교육 콘텐츠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 교육의 차별화 및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교육 과정은 통폐합하고 (예비)언론인 등 위원회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편된 교육 과정의 연간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같은 인격권 침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언론보도 피해의 구제 및 예방이라는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한 교육주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언론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유관기관의 수습기자 교육과 언론사별 언론인 교육 외에 진행 중인 인터넷 신문사와 1인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언론인을 위한 교육 실시 횟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단체 및 유관단체와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 강화할 예정이다.

## 제 3 장

#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 · 연구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언론법제 이슈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통해 미디어 법제 분야의 발전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간 및 학술행사 등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사회적 반향이 컸던 사건을 다루는 언론보도로 발생한 인격권 및 언론윤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분야의 언론법적 쟁점을 짚어보았고,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학문적 성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어 언론법제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최신 제도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부터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와 주요 판결을 담은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 언론법제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관련해 법리 형성과정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활발해진 남북 대화 시대를 맞아 남북 언론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자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상대방에 대한 오보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남북중재기구 구성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 가.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법제 및 다양한 미디어 관련 동향을 파악, 위원회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간 <언론중재>를 발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언론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언론중재> 특집기획 코너인 ‘Focus on Media’에서는 미투(me too) 운동과 남북정상회담이 큰 주목을 받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투 보도 및 북한 보도를 둘러싼 인격권 및 언론윤리 문제를 시의성 있게 들여다봤다. 또한 미투 운동 과정에서 주목받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쟁, 향후 남북언론중재기구의 가능성 등에 대해 다룸으로써 학술적 가치 제고는 물론 법·정책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다루기에는 논의가 농익지 않은 뉴미디어 분야의 언론법적 쟁점들도 살펴보았다. 특히 로봇기자의 법적 책임과 같이 AI, 알고리즘 등의 미디어 기술 분야에서 향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미리 다뤄봄으로써 다른 미디어 전문지에서는 다루지 않는 <언론중재>만의 콘텐츠 독자성을 띠었다. 저널리즘으로서의 댓글, 인터넷실명제 논쟁 등 진화한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도 담아냈다.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8년 봄호 (통권 146호)	<p>[Focus on Media : 진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표현의 자유]</p> <p>(1) 포털 뉴스의 다양성, 왜 필요한가 (윤영철)</p> <p>(2) 저널리즘의 위상을 획득한 포털 댓글과 표현의 자유 (이성규)</p> <p>(3)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그 후 (정필운)</p> <p>[사건 속 법률]</p> <p>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보도 (안순태)</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달라진 페이스북 알고리즘, 변화의 의미와 전망 (금준경)</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미국의 망중립성 드라마: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법적 쟁점 (정찬모)</p>
2018년 여름호 (통권 147호)	<p>[Focus on Media : 미투 이후 남겨진 언론 보도와 인격권 문제]</p> <p>(1) 시정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본 미투 보도 실태 (성기준)</p> <p>(2) 미투 보도 속 우리가 놓친 것: 한·미 보도 비교를 통해 (남지원)</p> <p>(3)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손지원)</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블록체인요? 일단 스팀잇 계정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김동현)</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한 EU GDPR의 이해 (박노형)</p>
2018년 가을호 (통권 148호)	<p>[Focus on Media : 통일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p> <p>(1) 북한 보도의 익명성 문제: 실태와 대안 (신석호)</p> <p>(2) 한반도 안보 특성과 ‘알 권리’ (왕선택)</p> <p>(3) 분단 저널리즘을 넘어서: 독일 통일보도의 시사점 (심영섭)</p> <p>(특별기고) 남북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언론중재기구 구축의 필요성 (변상욱)</p> <p>[사건 속 법률]</p> <p>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김술기)</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모바일, 수백 년 중국인들의 뉴스 소비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다 (이승환)</p>
2018년 겨울호 (통권 149호)	<p>[Focus on Media : 다가온 AI퍼스트 시대의 뉴스와 미래과제]</p> <p>(1) 뉴스 생산자 및 배열자로서의 AI에 대한 검토: 국내외 AI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김대원)</p> <p>(2) AI는 허위정보의 감별사일까, 생산자일까: AI기술과 허위정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오세욱)</p> <p>(3) 로봇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I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진우)</p> <p>[사건 속 법률]</p> <p>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손지원)</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유튜브와 온라인 저널리즘 (금준경)</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미국 CLOUD Act 통과, 국경 없는 데이터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송영진)</p>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페이스북 알고리즘 변화, 저널리즘 영역에 들어온 블록체인 기술, 중국의 뉴스앱 산업 발전, 유튜브에 기반한 온라인 저널리즘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건 속 법률’ 코너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관련 발의안의 헌법적 분석과 해외동향,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개념과 개선 방안, 자살보도의 바람직한 방향 등 최근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봐야 할 언론법적·언론윤리적 쟁점을 담았다. 또 ‘주목할

만한 해외 법제(판결) 코너 및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해 미국 망중립성 원칙의 도입 및 폐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 새로 시행된 EU GDPR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미국 CLOUD Act 발효를 통해 본 데이터접근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핀란드에서 국가기관 반론권, 혐오·차별매체와 관련해 발생한 법적 이슈, 독일의 개인 정보청구권/자기정보통제권 관련 최신 판례 등 해외의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판결 내용을 충실히 분석, 전달하였다.

#### 나.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향후 2년간 등재후보학술지 지위를 유지하며 등재지 선정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의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에 따라 2018년 제4권 제1호 및 제2호 게재논문 모두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으로 인정된다.

2018년 <미디어와 인격권>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학문적 성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2018년 제4권 제1호에서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를 진단하였고, 제4권 제2호에서는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다각적인 이슈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4권 제1호는 기획논문 대주제를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으로 정해 디지털 중심으로 변모한 미디어 환경을 맞아 새로이 떠오른 미디어 법 관련 권리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권 제2호는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면적 접근”을 기획주제로 선정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검열, 혐오표현 등을 접목해 법적·제도적·학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논문을 투고 받아 게재하였다.

특히 제4권 제2호에는 기획논문 7편, 연구논문 9편 등 총 16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이전보다 논문투고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술지가 언론법제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언론법제 관련 주요 학술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과로 판단된다.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미디어와 인격권에 관한 깊이 있고 다채로운 학술적 논의를 촉진, 장려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대학도서관, 언론 및 법학 관련 연구소와 기관, 언론학자 및 법학자를 비롯한 연구자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 논문 전문을 공개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4권 제1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박기주	데이터 혁신 시대를 위한 정보기본권 연구
연구 논문	윤권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판례 평석	류영재	[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2018년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4권 제2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성낙인	디지털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최 란	헌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승선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전문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홍남희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연구 논문	이원수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길용원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판례 평석	강재원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최신 연구가 미진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를 창간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을 개괄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를 자율규제와 법적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각국이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탐구했다.

2018년 제1·2호 합본으로 발간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9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은 물론, 디지털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향을 담았다.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다룬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언론분쟁조정 실무자인 중재위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법원, 언론사,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 현황 및 사례를 수록한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PDF파일과 E-Book으로 발간하였다.

기존의 사례집은 시정권고 사례와 조정·중재 사건을 모두 다루었으나,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조정·중재 관련 내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발간하였다.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조정·중재 통계데이터와 함께 2017년도에 처리한 3,230건 중 사건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주요 사례 30건을 엄선하여 각 사례의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주요 사례는 시의성 및 법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처리결과별, 침해유형별, 매체별, 중재부별로 안내하여 ① 정정보도 6건, ② 반론보도 6건, ③ 추후보도 3건, ④ 손해배상 6건, ⑤ 기사열람·검색 차단 4건, ⑥ 기타 5건으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조정중재 현황</li> <li>-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li> <li>-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li> <li>- 부록(연도별, 매체별 통계)</li> </ul>	PDF, E-Book (589면)

#### 마.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기존 시정권고 사례집은 조정·중재 사례와 시정권고 사례를 한 권에 실었으나 2018년부터는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관련 내용을 분리한 시정권고 사례집을 새로이 제작하였다.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에는 2017년에 처리한 1,034건의 시정권고 결정안건 중 시의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25건을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이는 2016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의 19건보다 6건 늘어난 것으로 침해유형별로 더욱 풍부한 사례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별도의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로 사생활 침해 6건, 피의자 신원공개 3건, 목격자 신원공개 1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상세묘사 1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1건,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1건이 있었다. 사회적 법익침해 사례는 보도 윤리 위반 1건,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건, 성(性) 관련

보도 1건, 자살 관련 보도 2건, 마약 관련 보도 1건, 폭력 묘사 1건, 충격, 혐오 보도 2건, 기사형 광고 1건이 있었다.

####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권고 현황</li> <li>- 주요 시정권고 사례</li> <li>- 시정권고 전체 목록</li> </ul>	PDF파일 및 E-Book (280면)

#### 바.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과 주요 판결 전문을 수록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언론의 취재·보도 현장에서 언론분쟁 예방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언론 관련 판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2017년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83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명예훼손 사례 16건, 사생활 침해 사례 3건, 성명권 침해 사례 1건, 초상권 침해 사례 1건 등 21건에 더해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 사례 5건, 기사삭제청구 사례 등 5건까지 총 31건을 주요 판결로 선정, 판결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 2. 토론회 개최

### 가. 토론회

위원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초상권 침해 관련, 법리 형성 과정과 국내외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11월 20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션 1]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 발표를 맡은 위원회 이수종 교육본부장은 독일 법원 및 유럽인권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온 초상권 법리의 발전과정을 살폈으며, [세션 2]에서는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에는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1] 지정토론자인 구분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과 신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독일 초상권 법리의 시사점 및 우리 판례와의 비교 등에 대해 토론했고, [세션 2] 토론자로 나선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미디어가 급속도로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 그 판단에 있어 구체적 이익형량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를 다룬 발제 및 토론 내용이 현업 언론인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언론 측에서는 초상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도 시 알 권리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현장에서 위축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018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8. 11. 20.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주 제	<p>[대주제]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                      사회: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                      [세션 1]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                      - 발표: 이수종(위원회 교육본부장)                      - 토론: 구분권(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신동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p> <p>[세션 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                      발표: 장태영(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토론: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영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p>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등 50여 명

## 나.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 언론의 상대방에 대한 보도 현실과 문제, 해법 등을 살펴보고자 12월 4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단체, 학계, 언론계,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제1주제 발표는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영주 명예교수가 맡았다.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김정은 시대’를 맞아 달라진 북한 언론 이론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북한 언론 매체의 기능론과 일반원칙, 속성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김 교수는 남한 매체의 북한관련 언론보도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남한의 각 언론사가 이미 마련한 바 있는 북한 관련 보도준칙 준수 필요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때 북한 보도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는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신석호 팀장은 남한의 주요 언론사 5곳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2018년 남한 언론사별 남북 언론 교류의 성과를 짚었다. 아울러 상기 5곳 언론사의 북한 관련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도 남북 언론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 팀장은 남북 언론 교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고민의 시간이 필수적이라며 남북 언론중재기구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김중배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 지승우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남북 간 언론중재기구나 제도의 추진은 단계별로 남북 관계 변화를 주시하면서 준비할 것을 주문하거나, 북한 관련 오보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적대적 분단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대중이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8년도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8. 12. 4.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주 제	<p>[대주제]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정은령(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li> </ul> <p>– 제1주제: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김영주(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li> </ul> <p>– 제2주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li> </ul> <p>–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li> <li>·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li> <li>· 김중배(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li> <li>· 지승우(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li> </ul>
참석인원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단체, 학계, 언론계,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

#### 다.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2018년 11월 9일~10일 양일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훈 부장판사(서울제5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2018년도 중재위원 연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조정 중재 실무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3가지 주제를 선정, 진행하였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는 '미디어의 미래와 새로운

권리상충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 충돌 이슈를 설명했고, 권덕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경기중재부장)는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표 작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광주중재부 중재위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조정사례 연구 - 지역언론 對 지역언론의 조정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중재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권리상충에 대한 각종 법적 문제와 함께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손해배상산정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쏟아지는 등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재위원의 조정중재 전문성 강화 및 언론 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 확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위원 연수 주제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중재위원 연수 개최현황】

일 자	2018. 11. 9. ~ 11. 10.
장 소	곤지암 리조트 (경기도 광주)
주 제	제1주제 : 미디어의 미래와 새로운 권리상충 이슈 · 발제 : 황용석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제2주제 :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표 작성과 개선 방향 · 발제 : 권덕진 (경기중재부 중재부장) 제3주제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조정사례 연구 - 지역언론 對 지역언론의 조정사례 · 발제 : 윤석년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53명

##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언론법제 및 저널리즘 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학회지, 판례집 등을 구비한 언론분야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여 언론법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론조정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2018년 10월 소장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소장 자료를 전수 점검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진 자료를 폐기처리하고 전산상 누락된 자료를 재등록하는 등 자료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또 디비피아(DBpia)와 국회전자도서관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폭넓은 자료 활용을 가능케 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실은 중재위원 및 직원의 실무와 학술 활동에 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료실 보유 장서 등록 현황】

(2018. 12. 31. 현재 / 단위: 권)

구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계
2018년도 신규 구입	85	1	86
보유 장서	4,258	907	5,165

## 제 3 절      평 가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 언론법제 연구·진흥을 위해 조사·연구 문헌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토론회 등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미디어와 인격권>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어 언론법제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학술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남북 언론이 한반도 평화 협력 시대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남북 간 중재기구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발간물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으로 발생한 인격권 침해 이슈와 논점을 발굴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물이 언론법제 연구와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인격권 보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제 4 장

# 이용만족도 조사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매년 언론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개선 사항 진단, 위원회 장·단기 정책 및 추진방향 설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이용만족도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언론조정·중재 신청인/피신청인(이하 신청인/피신청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리서치랩을 통해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별로 온라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신청인·피신청인), 전화조사(상담이용자), 현장조사(교육수강자)를 실시하였다. 2018년 조사는 신청인 188명, 피신청인 173명, 상담이용자 314명, 교육수강자 2,3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로 신청인 10명, 피신청인 11명을 선정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응답자의 의견과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만족도 조사 척도를 리커트 5점 척도(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에서 7점 척도(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약간 만족-보통-약간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매우 불만족)로 변경하고 가장 낮은 만족도의 환산점수를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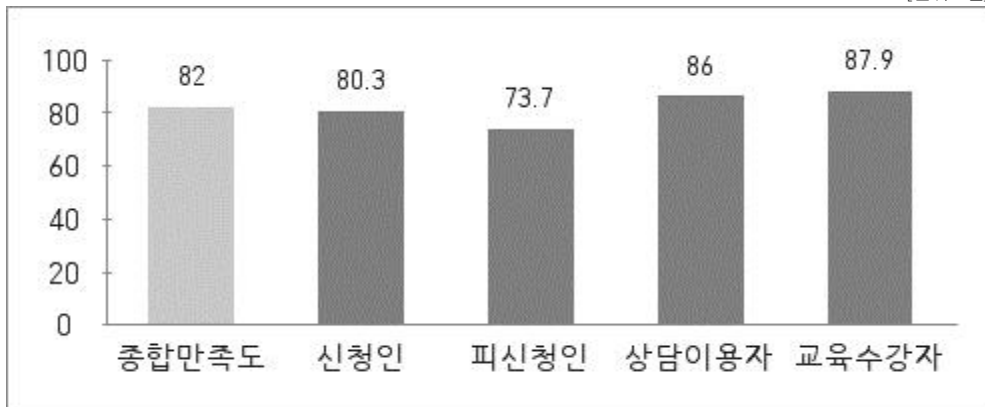
에서 0점(기존 20점-40점-60점-80점-100점에서 0점-16.7점-33.3점-50점-66.7점-83.3점-100점으로 세분화)으로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다.<sup>2)</sup>

조사대상 및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피신청인 대상으로는 ‘심리 전·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등으로 차원을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특히 신청인을 대상으로는 언론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묻고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인 ‘상담창구’ 및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피신청인을 대상으로는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밖에도 신청인/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인터넷 상의 새로운 피해(복제 기사, 댓글 등)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상담 절차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자세’, ‘문제해결 도움도’ 등의 항목을 구성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위원회가 진행한 다양한 교육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자료 충실성’ 등을 포함한 총 5개 차원의 항목을 구성해 만족도를 측정했다.

【2018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2) 이로 인해 전년 대비 만족도 점수 자체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를 단순비교해 전년 대비 조사 대상의 실제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 2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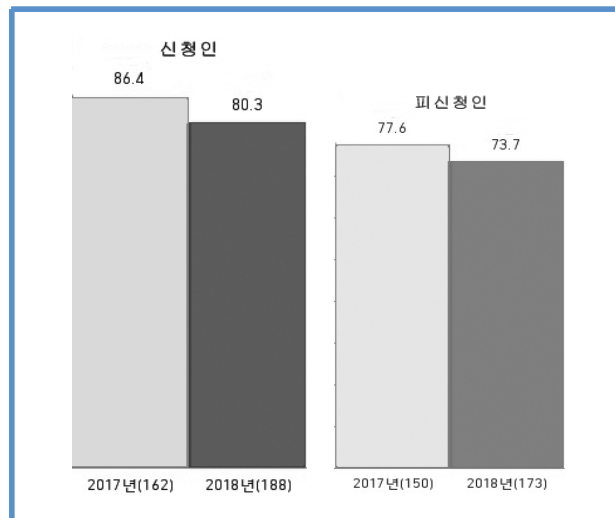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18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80.3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3.7점으로 나타났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85.7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2.4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0.3점) > ‘신청절차 및 방법’(80.2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3.5점)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78.0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5.3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8.1점) 순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2017년 피신청인의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 대한 만족도에서 긍정 응답(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비율이 60.7%였으나 2018년 67%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 조정중재 과정의 상대적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신청인의 68.3%가 긍정적 응답을 해 2017년(63.3%)보다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아졌다. 2017년 문제로 지적되었던 피신청인의 중재부 심리진행 차원 만족도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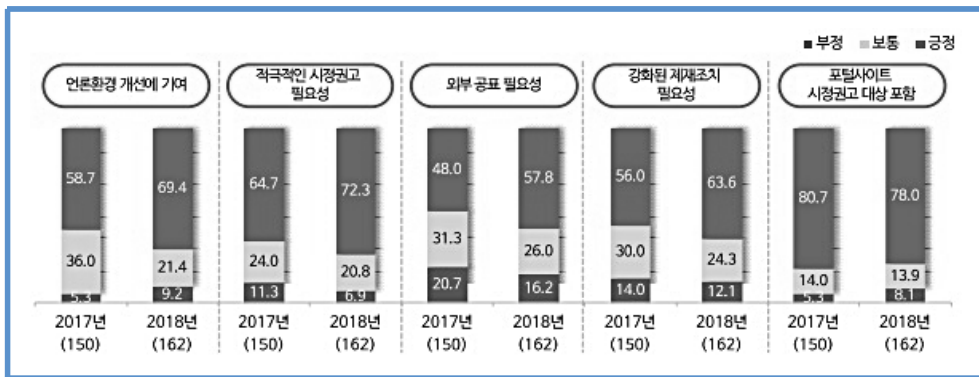
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 77.1점, 피신청인 70.3점으로 나타나 신청인의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 이미지

평가 항목 중 ‘국민의 인격권 보호’ 부분에서 신청인은 80.9점, 피신청인은 73.9점으로 나타나 측정 대상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설립목적이자 최우선 업무 목표인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위원회가 해당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17년에 이어 긍정적 평가 기조가 이어졌다. 시정권고 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피신청인의 69.4%가 ‘언론환경 개선에 기여 한다’고 답했고, 72.3%는 보다 적극적인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의견(피신청인)】**

[단위: 점, Base: ( )]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권리 침해 및 구제와 관련,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95.7%, 피신청인의 6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2017년 62.0%에서 2018년 68.8% 오른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18년에는 유튜브 등의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신청인의 92%, 피신청인의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 인터넷 미디어로 인한 피해구제 수단 마련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기사 수정, 보완, 열람차단 요구 권리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74.4	17.6	3.7	2.7	0.0	1.1	0.5	95.7	2.7	1.6
피신청인	27.1	24.9	16.8	17.8	3.5	3.5	6.4	68.8	17.8	13.4

##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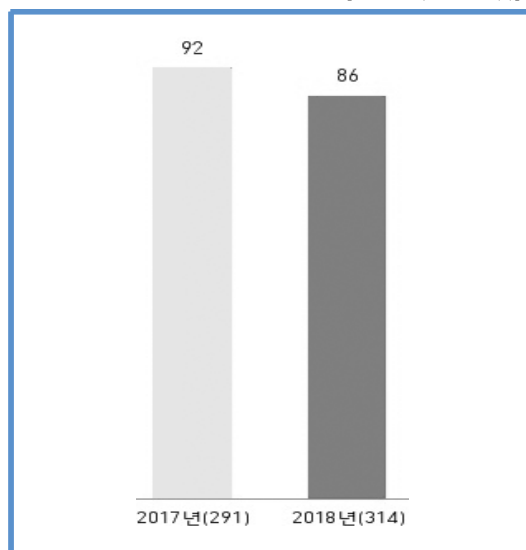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67.5	19.7	4.8	4.3	0.5	1.6	1.6	92.0	4.3	3.7
피신청인	42.7	21.4	12.1	11.6	2.9	3.5	5.8	76.2	11.6	12.2

##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018년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6.0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 경청자세’(87.6점) > ‘상담원 친절성’(87.5점) > ‘적극적인 상담’(86.9점) > ‘신속한 상담’(85.7점) > ‘상담내용 신뢰성’(85.6점) > ‘문제해결 도움’(82.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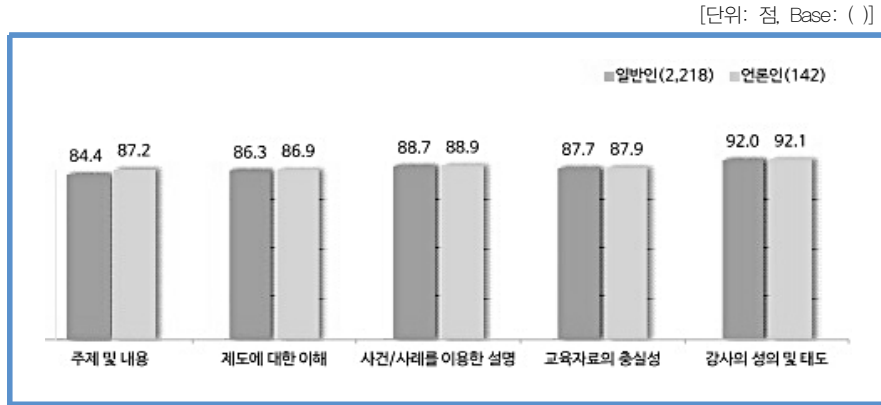


##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87.9점, 일반인 수강자 만족도는 87.8점, 언론인 수강자는 88.6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일반인 92.0점 / 언론인 92.1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일반인 88.7점 / 언론인 88.9점) > ‘교육 자료의 충실성’(일반인 87.7점 / 언론인 87.9점) > ‘제도에 대한 이해’(일반인 86.3점 / 언론인

86.9점) > '주제 및 내용'(일반인 84.4점 / 언론인 87.2점) 순으로 나타나 각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일반인보다 언론인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항목별 만족도】



## 제 3 절      평 가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조사 척도 및 환산점수 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응답 비율과 척도를 근거로 산출한 만족도 점수를 단순 비교해 실제 만족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 만족도 여부와 무관하게 2017년 대비 점수가 대체로 하향한 2018년 조사 결과 중에서도 만족도 점수가 오른 항목은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신청인의 손해배상 금액 및 손해배상 금액 지급시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 점수가 더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금액에 있어 2017년 63.3점에서 2018년 69점으로 5.7점이, 손해배상 금액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2017년 71.7점에서 2018년 85.7점으로 14점이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신청인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마련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액 등을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총 6개 조사 항목 중 5개의 항목에서 2017년 대비 긍정응답 비율이 높아진 점 역시 의미가 있다. 이는

시정권고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수준 높은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한 긍정적 제도라는 점을 피신청인들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8년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인터넷 매체로 인해 권리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기사 수정·보완·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제5장

#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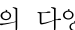
### 제1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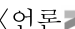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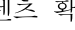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함께 캐릭터 공모전 등을 실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홍보효과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대외홍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위원회 법정업무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했다. 위원회 업무와 연관된 전문콘텐츠를 제작·발행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면서, 일상·공감콘텐츠도 적절히 안배하는 홍보 전략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층이 위원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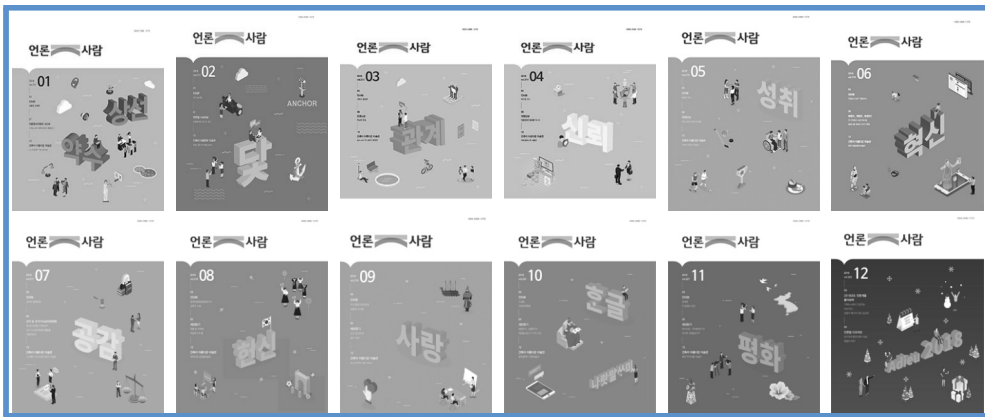
또한 캐릭터 공모전 개최,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 및 위원회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등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익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옥외 전광판, 서울 지하철 PDV (Platform Digital Vision) 광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 시청역 2호선 지하철 음성안내 광고 집행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 활동을 강화하였다.

##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제작·발간(매월 5천 부)해 전국 시·도·군·구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법원, 대학,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2018년에는 미디어트렌드·언론법제 등 위원회 전문콘텐츠 관련 내용은 ‘언론+’ 섹션으로 분류하고, 문화·예술·생활 등 공감형 콘텐츠는 ‘사람+’ 섹션으로 구분하여 독자들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 품질을 제고하였다.

위원회 소식지 <언론  사람>은 지면 발행부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면으로 발행된 <언론  사람>의 콘텐츠를 카드뉴스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문법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하고, 뉴스레터로도 제작하여 매월 약 4,000명의 수신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더욱 넓혔다.



【2018년 발행 <언론  사람>】

### 2. 위원회 광고 집행 현황

위원회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위원회 인근 세종대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옥외매체 광고를 실시하여 비용대비 효율적인 광고 집행은 물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잦은 노출 빈도와 높은 주목도를 고려, 서울신문사 뉴스 전광판 광고를 집행하였으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음성안내 광고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민원인들이 쉽게 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소개 내용을 포함시켰다. 12월에는 산타클로스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영상을 16개 역사에서 총 43기의 84인치 PDV(Platform Digital Vision)를 통해 전달하였다.

**【매체광고 집행내역】**

매 체 명		집행기간	비고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5. 1. ~ 8. 15. (3개월) 9. 15. ~ 2019. 1. 7. (4개월)	12m×9m, 양면
지하철 음성 안내광고	2호선 시청역	11. 1. ~ 11. 30.	7초 음성안내
지하철 역사 영상광고	서울역 등 16개 역사	12. 1. ~ 12. 31.	20초 인포그래픽영상



시청광장 방면



광화문광장 방면

**【서울신문사 전광판 광고 화면】**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지하철역사 PDV 광고 화면】**

### 3. 온라인 기반 홍보 활동 강화

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위원회 공식 카카오키휴 계정 추가 개설하였다. 위원회 캐릭터 어니 이모티콘 이벤트를 활용해 3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향후 블로그 콘텐츠 및 이벤트와 연동해 카카오키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공감 블로그’로 명명된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관련 뉴스뿐 아니라 최신 미디어 이슈, 언론법제 해설, 유익한 생활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조회 수, 활동 반응 등의 수치가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웹툰,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형식으로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했으며, 질 좋은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 판’ 메인에 4건이 노출되는 등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18년 위원회 블로그 월간 평균 방문회수는 29,016건, 월간 평균 조회수는 36,291건을 기록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도 27,000여 건을 기록했다.

### 4. 대국민 대상 참여 홍보 활동 전개

위원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을 운영하였다. 상반기에는 제3기 SNS 기자단 11인을 선발하여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활동성적을 바탕으로 제3기 기자단 중 4인을 선발하였다. 대학생 기자단은 위원회 각종 제도를 쉽게 알리는 내용과 최신 미디어 이슈와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기사와 영상물을 작성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제3기 SNS 기자단의 기사가 ‘네이버 판’ 메인에 노출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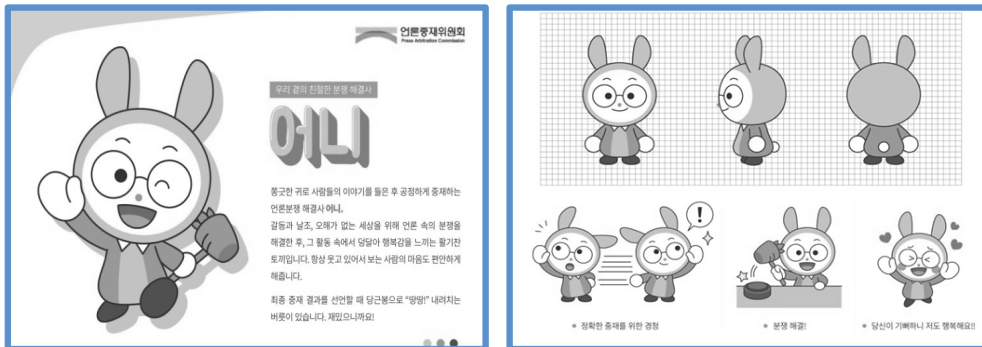


【제3기제4기 위원회 SNS 기자단 운영】

또한 위원회는 '2018년 위원회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반인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홍보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상작은 심사위원 평가와 네티즌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였으며, 심사위원 평가 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네티즌 투표에는 약 1,300여 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공모전 개최, 심사, 수상작 발표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공모전에는 총 36편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6편(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캐릭터 이모티콘, 교육교재, 홍보 책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다.



【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개최】



【캐릭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어니'】

## 5. 모바일 홍보 기반 마련

위원회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공모전 대상 수상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모티콘 제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배포했으며 출시 10시간 만에 준비 수량(43,000여 개)이 모두 소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위원회는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를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 구독자 수를 3만 명 이상 확보함으로써 대외홍보지, 위원회 소식 등을 전할 수 있는 모바일 홍보 채널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캐릭터 이모티콘】

## 6.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토론회 개최,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결과, 신임위원장 취임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보도자료 23건을 배포하였으며, 총 289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뉴스통신 등 언론사의 위원회 담당기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미디어 홍보의 확산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2015년도에 구축한 디지털 전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위원회 역사 기록과 업무 홍보에 활용했다. 사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행물 8건, 사진 및 디지털 파일 4건을 사료로 지정하였다.

## 제3절 평가

2018년 위원회 홍보는 이용자 중심의 홍보와 디지털 및 모바일 기반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외홍보지의 콘텐츠를 블로그·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에 맞는 SNS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등 콘텐츠 선순환을 통해 어떠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광고 역시 기존의 홍보 방식에 더해, 지하철 음성안내광고,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발행 등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홍보효과를 창출하였다.

캐릭터 공모전,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성과 측면에서도 비용대비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8년은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구독자수를 늘리는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2018년 마련된 모바일 홍보 기반은 향후 대외홍보지(지면), 블로그 및 페이스북(온라인)의 콘텐츠를 모바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의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홍보 전략을 마련, 언론조정·중재제도 등 위원회 기능과 역할, 언론 관련법 쟁점 및 이슈,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 관련 생각거리, 가볍지만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생산, 가공해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위원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 제 6 장

# 기타 주요활동

### 제 1 절 개 요

####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언론 관련 현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관은 Grupo Radio Centro(라디오 방송국), El Universal(신문사), Canal Once(공영 방송국) 등 멕시코의 주요 언론매체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사설조정중재기구), CNPA(California News Publication Association, 캘리포니아뉴스협회), U.C.Berkeley Law School KLC(버클리 법대 한국법연구회)로 조정중재 전문기구와 언론법제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멕시코는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편<sup>3)</sup>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언론사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 보였으며, 정치인 등 유명인과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에 대한 보도나 확정되지 않은 뉴스에 있어서는 신중한 팩트체크를 하는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조사결과, 조사대상 180개국 중 멕시코는 147위, 미국은 45위로 나타났다(<https://rsf.org/en/ranking>).

미국은 최신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 관련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위원회 시찰단은 조정업무에 특화된 JAMS를 방문하여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다수의 조정 사례를 듣고 위원회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조정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CNPA의 Bill Johnson 회장과 Tom Newton 전문이사는 면담 초기 위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으나, 한국 언론 현황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면서 위원회가 법원 소송에 시달리는 언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라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Grupo Radio Centro 방문】



【E! Universal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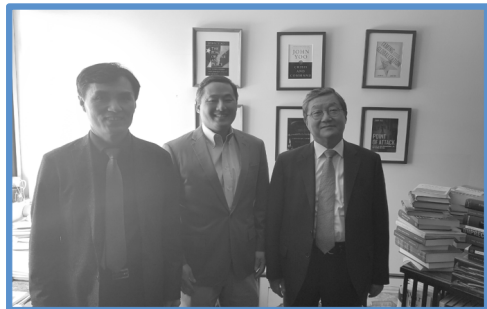
【Canal Once 방문】



【JAMS 방문】



【CNPA 방문】



【U.C.Berkeley Korea Law Center 방문】

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 업무 관련 기구와 교류하면서 뉴스 소비 플랫폼의 다변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언론보도피해의 구제를 위해 언론법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

시찰자 및 수행자	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인석 위원장</li> <li>- 손정배 교육팀장</li> <li>- 장성원 경남사무소장</li> </ul>	2018. 4. 24. ~ 2018. 5. 4.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upo Radio Centro(라디오방송국)</li> <li>- El Universal(신문사)</li> <li>- Canal Once(공영방송국)</li> </ul>
		미국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MS(조정중재기구)</li> <li>- CNPA(캘리포니아 신문발행인 협회)</li> <li>- U.C.Berkeley Law school KLC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센터)</li> </ul>

**2. 국제컨퍼런스 협력**

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2018 중국 전매대학(CUC)-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NCA) 국제컨퍼런스’(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co-hosted by the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and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신문방송학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8 동서문화센터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2018 East-West Center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근 미디어 동향을 살피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 기회를 가졌다.

**【국제컨퍼런스 참가 현황】**

구 분	내 용	
행 사 명	2018 중국전매대학(CUC)-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NCA) 국제컨퍼런스	2018 동서문화센터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일 정	2018. 6. 20. ~ 2018. 6. 23.	2018. 6. 24. ~ 2018. 6. 28.
장 소	중국 베이징	싱가포르
주 제	글로벌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거버넌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미래 - 미디어 생태학 및 빅데이터
참석자	- 서울제5중재부 김형훈 중재부장 - 서울제7중재부 한은경 중재위원 - 충북중재부 김영일 중재위원	- 서울제1중재부 류춘열 중재위원 - 서울제5중재부 심기준 중재위원 - 강원중재부 김성기 중재위원

중국전매대학과 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가 ‘글로벌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거버넌스’(Communication, Media, and Governance in the Age of Globalization)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온 언론 학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을 둘러싼 최근 현안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의 언론 학자들은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한 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Trevor Parry Giles 교수(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요청으로 양국 언론현황 및 언론중재제도를 주제로 간담을 가지기도 했다.

나아가, 6월 21일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에서 이루어진 ‘빅데이터 시대의 미디어 타율(他律), 자율(自律)과 합률(合律) 간담회’에는 베이징대, 중국 전매대(傳媒大學), 천진 사범대(天津師範大學)의 법학, 언론학 교수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쉬징(許靜)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 교수, 리단린(李丹林) 중국 전매대학 법학부 교수, 인리(殷莉) 천진 사범대학 신문 방송학원 교수 등과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 언론조정실무 등 위원회 업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 - 베이징대(北京大學) 신문방송학원 간담회 실시】**

‘오늘날 뉴스란 무엇인가?’(What Is News Now?)를 주제로 열린 ‘2018 동서문화센터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는 30여 개국 350여 명의 미디어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아시아 및 글로벌 미디어 동향과 과제, 가짜뉴스, 모바일 저널리즘 등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설,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미디어 동향에 관한 심도 있는 소개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제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해외 언론 동향과 미디어 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홍보하며 언론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2018 중국전매대학-전미커뮤니케이션학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2018 동서문화센터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

###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는 지역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 2회(경기, 광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간담회 7회, 지자체 공보담당관을 초청한 간담 1회 등 총 10회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는 지역중재부의 중재위원과 지역언론인 및 언론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지역의 언론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언론현안 청취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4. 직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위원회는 직원별 연간 교육 시간 이수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육 시간 이수는 권장사항으로, 직원 개개인이 자율적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8년에도 법정 의무교육·언론법제교육·인문소양교육 등의 다양한 사내강의를 폭넓게 실시하였다.

언론법제교육으로는 국내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을 다루면서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고민해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me too)’와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전근대적 ‘갑질’이 사회·정책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젠더 감수성’을 주제로 한 대면(對面)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성(性)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18년도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 역시 직원들이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내부 교육 실시 현황】

구분	날짜	주제	강사
폭력예방	4. 4.(수) ~5. 1.(화)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인문소양	5. 3.(목)	조직소통 활성화	권서희 (기업행복연구소 강사)
개인정보보호	6. 29.(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김정희 (강원지방경찰청 경위)
성(性) 고충 상담원 실무	7. 5.(목) ~7. 6.(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언론법제	8. 17.(금)	공영언론방송의 역할과 과제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신입교육	8. 20.(월)	신입직원 전문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폭력예방	9. 19.(수) ~10. 16.(화)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언론법제	10. 24.(수)	발언의 자유와 증오발언 규제 담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장애인 인식개선	11. 14.(수) ~11. 27.(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온라인)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인문소양	12. 3.(월)	지금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박하연 (사단법인 여성의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
소 계		10회	

그 밖에도 2018년에는 ‘소송실무연구’ 모임이 구성되어 위원회 조정/중재절차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률 이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모임 활동현황】

연구모임명	활동내용
소송실무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업무 유관 법률이론 정리 및 학습</li> <l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li> <li>- 행정처분보도와 추후보도청구</li> <li>-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지위에 따른 능력과 적격</li> <li>-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법적 책임</li> <li>-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민사 책임</li> <li>- 저작권 일반</li> <li>- 개인정보보호법</li> </ul>

5. 사회공헌활동

위원회는 2018년 6월과 12월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직원들이 직접 반죽하여 구운 따뜻한 빵은 지역소외계층과 독거노인에게 전달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본연의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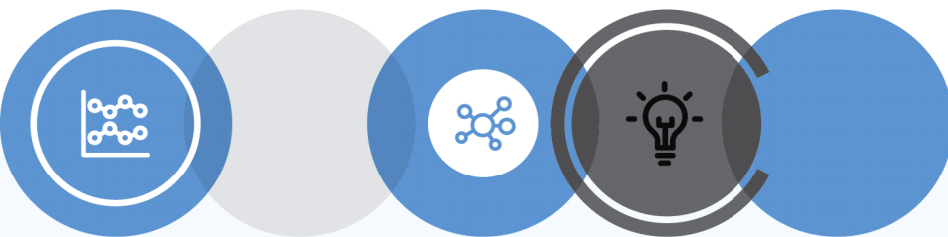
【2018. 6. 14. 사랑의 빵 나눔 행사】



【2018. 12. 5. 빵 나눔터 봉사활동】

【2018년 사회공헌 활동】

일 자	내 역	지 원 처	지원금액(원)
2018. 6. 14.(목)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나눔터 제빵 활동	대한적십자사	500,000
2018. 12. 5.(수)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빵나눔터 제빵 활동	대한적십자사	500,000
2018. 12. 27.(목)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후원	대한적십자사	2,000,000



제4부 2019년도  
업무계획

---



# 제 1 장

## 2019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 1.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청구 비율 70% 상회

- 최근 5년간 매체 유형별 조정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청구건수가 평균 70%를 상회
-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청구건수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이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 특성에 맞는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매체별 조정신청 비중 현황】

매체유형*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면매체	1,542 (8.1%)	775 (14.8%)	589 (18.6%)	403 (12.5%)	470 (13.2%)
방송매체	3,776 (9.8%)	892 (17.1%)	423 (13.3%)	361 (11.2%)	331 (9.3%)
인터넷매체	13,730 (72.1%)	3,553 (68.0%)	2,156 (68.0%)	2,464 (76.3%)	2,756 (77.4%)
기타	-	7 (0.1%)	2 (0.1%)	2 (0.0%)	5 (0.1%)
합 계	19,048	5,227	3,170	3,230	3,562

\* 지면매체: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방송매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포털, 방송사닷컴, 기타: 정보간행물, 팟캐스트 등  
 ※ 세월호 관련 대량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4년은 2,931건, 2015년은 3,319건

## 2.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계류 현황

- 20대 국회 개원 이후 8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백혜련 의원 안\*\*을 제외한 7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
  - 특히, 잘못된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곽상도 의원안이 발의(2016. 10.)된 후 2017년 3월까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
    - \*\* 중재위원의 결격 사유(법 제8조제2항) 중 제4호를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에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개정(2018. 12. 24. 공포)

## 3.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며, 이 중 4명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하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 김성수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참고
-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주된 경로가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8. 12.까지였던 운영 기간도 2019.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 개정 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논의에 대한 관심 필요
    -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로 하고 있음

## 5. 혐오, 차별 발언 관련 사회적 갈등 고조

- 해외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국내로도 확산되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 혐오와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
  - 언론도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 관련 보도에 있어 차별적, 편견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회적 갈등 유발과 확산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지적
- 그 밖에도 예멘 난민과 이주노동자, 특정 지역, 성별 등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이 문제되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관련 심의를 진행한 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혐오, 차별 발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6. 디지털 심의시스템 구축 및 직원그룹웨어 고도화

- 위원회는 2019년 디지털 심의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 2011년 도입하여 운영한 지 8년이 경과한 직원그룹웨어에 대해서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
  - 디지털 심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정권고심의와 선거기사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기록물의 보관 및 열람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그룹웨어 역시 현재 인터넷 사용 환경에 맞게 고도화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일 계획

## 7.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증가

- 위원회 인사규칙에 따라 만 57세부터 퇴직(만 60세) 시까지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업무 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대상지역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 역	1				1
서 울	1	2	2		2
누 계	2	3	5	4	5

## 제 2 장

#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1.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제도 마련

-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인터넷 매체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적극 추진
  - 조속한 개정법률안 발의와 논의를 위해 국회, 문체부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 환경 구축
  - 한편, 조정사건증가로 인해 중재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에 중재위원 증원 사항이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피해구제 방안 검토
  -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안 마련
  - 위원회는 지난 2011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재 적용 중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 필요성 발생

- 2018년 제5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하였으며,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조정의 특성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안이 마련되면 조정심리에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정신청 및 접수시스템 개선
  - 매체별로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접수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여러 매체라 할지라도 동일 법인 언론사인 경우는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심리 효율화를 도모
  - 상담창구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개선

##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심의제도 운영

- 차별적 발언, 혐오 발언 관련 보도 모니터링 강화
  - 급진적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혐오 표현이 생산되고 있으며, 언론은 그러한 발언과 표현들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차별적, 편견적 발언과 표현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
    - 언론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발언, 혐오 발언의 확산 통로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흐름을 반영한 시정권고제도 운영
  - 또한,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익 침해 보도와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추진
  - 상설기구인 인터넷선거기사심위원회와는 달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기간에 한해 설치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어 인터넷과 지면의 동일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 여부 및 제재 수위가 기구 간 상이하게 결정되는 문제 발생
  -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특성상 등록일 전에 게재되는 현직 공직자(잠재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공정한 선거기사심을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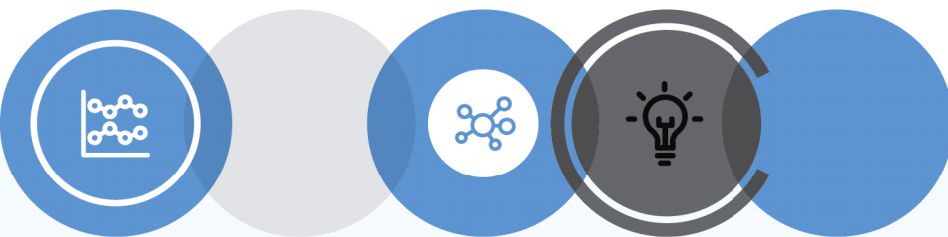
### 3.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연구 강화

-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차별적, 편견적 시각이 포함된 보도 관행으로 인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언론인 교육 강화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격권 침해 관련 시정권고심 의기준 및 시정권고 사례를 활용하는 등 인권 의식 전파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반차별적 담론 관련 연구주제 발굴 및 학술행사 기획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 침해 관련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학술행사를 기획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극복 방안을 검토

### 4.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

- 디지털 기사심의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시정권고심의 및 선거기사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기록물의 보관 및 열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사심의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직원그룹웨어를 현재 인터넷 사용 환경에 맞게 고도화하여 사용 편의성을 증대할 계획
  - 디지털 기사심의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기능 및 직원그룹웨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여 시스템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위원회 내규 개정 시 목적에 상위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고, 각 조항의 제·개정 연혁을 표기하여 규정의 완결성을 확보
  - 타 규정 개정 등으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 참고 시 혼선을 예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 인적 자원 및 사업 운용 방식 점검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
  -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임금피크전문직'으로 직종을 전환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운영 예규'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전문성을 살린 업무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
  - 업무 효과성, 효율성 검토를 통해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존치 여부 및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한정된 인력을 위원회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부록

# 위원회 업무현황



##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18년 12월 말 현재)

임원	
성명	주요경력
 <p>위원장 <b>이석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등법원 판사</li> <li>▶ 감사원 감사위원</li> <li>▶ (현) 변호사</li> </ul>
 <p>부위원장 <b>황병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li> <li>▶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li> </ul>
 <p>부위원장 <b>송종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li> <li>▶ 중앙일보 상무이사</li> <li>▶ (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li> </ul>
 <p>감사 <b>김철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li> </ul>
 <p>감사 <b>이미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변호사</li> </ul>

**서울 제1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최 석 문**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2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우 철**

-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 병 선**

- ▶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진 우**

- ▶ 동아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 대기자
-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류 춘 렬**

- ▶ 문화방송 시청자위원
- ▶ 한국소통학회 회장
- ▶ (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 성 은**

- ▶ 여성가족부 공보관
- ▶ (현) 한국소통학회 부회장
- ▶ (현)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장



**권 정 숙**

- ▶ 한겨레신문 방송미디어부장
- ▶ (현) 새언론포럼 운영위원
- ▶ (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및 기획편집위원장



**양 소 영**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 (현) 한국코텐초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 (현) 변호사



**진 형 혜**

- ▶ 우정사업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 (현) 변호사



**이 장 희**

-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대변인
- ▶ (현) 대한변협 사무총장
- ▶ (현) 변호사

**서울 제3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김영학**

-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박병태**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관해**

- ▶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경영기획실장
- ▶ 충청일보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



**이석형**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감사원 감사위원
- ▶ (현) 변호사



**김선종**

- ▶ 속초지원 지원장
-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 (현) 변호사



**양승찬**

- ▶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 ▶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 ▶ (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미선**

- ▶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 ▶ (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 (현)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은령**

- ▶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 (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황용석**

-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 (현)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곽란주**

- ▶ 서울동부지법, 부천지청,  
천안지청 검사
-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 (현) 변호사

서울 제5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김형훈

-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김행순

-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희

- ▶ 동아일보 국제부장
-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 ▶ (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장정수

- ▶ Asiaweek 서울특파원 기자
- ▶ 한겨레신문 편집인 겸 전무
-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박종권

- ▶ 중앙일보 논설위원
- ▶ JTBC 시청자심의실장
- ▶ (현) 극동대 초빙교수



김철웅

-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



김희진

-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 ▶ (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영성

- ▶ 전주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 (현) 변호사



김보람

- ▶ 주식회사 포스코 과장
- ▶ (현) 변호사



장윤미

- ▶ CBS 방송사 보도국 기자
- ▶ (현) 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황기선

- ▶ 인천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8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박미리

-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태경

- ▶ 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 ▶ KTV 방송제작부장



송충식

- ▶ 경향신문 논설주간(상무이사)
- ▶ 연합뉴스 TV 뉴스총괄부 전문위원



안승국

-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현)변호사



서경주

- ▶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 ▶ 상명대 초빙교수
- ▶ (현)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재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 (현) 한국언론학회 회장
- ▶ (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영

-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 ▶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 ▶ (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소영

- ▶ 코리아헤럴드 기자
- ▶ (현) 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
- ▶ (현)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최승재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 (현) 변호사

**부산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전 상 훈**

-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 ▶ (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장 병 운**

- ▶ 국제신문 기자, 논설고문
-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부이사장



**김 은 경**

- ▶ 진주MBC, 부산MBC, 부산KBS 아나운서
-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 비서관
- ▶ (현)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



**전 정 속**

-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 ▶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 ▶ (현) 변호사



**이 미 현**

- ▶ (현) 변호사

**대구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강 동 명**

- ▶ 대구고법 판사
- ▶ (현)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유 영 철**

- ▶ 영남일보 편집국장
- ▶ (현) 계명대 산학인재원 초빙조교수



**조 성 호**

- ▶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 ▶ (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동 원**

-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 연구법관
- ▶ (현) 변호사



**권 장 원**

- ▶ KBS 뉴스옴부즈맨 위원
-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교육연구회장
- ▶ (현) 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주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박길성**

-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 ▶ (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염원섭**

-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윤석년**

- ▶ 한국방송학회 회장
- ▶ (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문**

- ▶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 ▶ 중앙일보 상무이사
- ▶ (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조경완**

- ▶ 광주일보 기자, 편집국장
- ▶ (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승선**

-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 (현)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정민**

- ▶ (현)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
- ▶ (현) 한국방송학회 회장
- ▶ (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노신**

- ▶ 미국 MetLife 통번역사
- ▶ 충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 ▶ (현)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서애련**

- ▶ 서울남부지검 검사
- ▶ (현) 변호사



**박주영**

- ▶ (현) 변호사

**경기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권 덕 진**

- ▶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송 대 근**

- ▶ 동아일보 편집국부국장, 논설위원
- ▶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발행인



**김 정 범**

- ▶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 ▶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현) 변호사



**장 미 애**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 (현) 변호사



**오 동 현**

- ▶ (현) 변호사

**강원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	-------



중재부장  
**김 현 미**

- ▶ 인천지법 부장판사
- ▶ (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 광 식**

-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 ▶ 강릉문인협회 회장
- ▶ (현) 후조문학회 회장



**김 학 성**

- ▶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 ▶ 한국헌법학회 회장
- ▶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영 재**

- ▶ 연합뉴스 기자, YTN기자
- ▶ (현)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용 재**

-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 (현)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 (현) 변호사

충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지영난

-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 (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구창모

- ▶ 청주지법 부장판사
- ▶ (현)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영일

- ▶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 ▶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 ▶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성중

- ▶ 전라일보 기자, 편집부장, 논설위원
- ▶ 전북일보 기자, 편집국 총괄부국장



정연우

- ▶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 (현) 세명대 사회과학대학장, 광고홍보학과 교수



황선철

- ▶ 대한변협 부협회장
- ▶ (현) 변호사



이광형

- ▶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대전고검 검사
- ▶ (현) 변호사



김선남

- ▶ 호남언론학회 회장
- ▶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 ▶ (현) 원광대 사회과학대학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류성용

- ▶ (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 (현) 변호사



정제훈

- ▶ 전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 대전지검 검사
- ▶ (현) 변호사

**경남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황 영 수**

- ▶ 대구지법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지원장
- ▶ (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김 진 영**

- ▶ 서울중앙지법 판사
- ▶ (현) 제주지법 부장판사



**안 차 수**

- ▶ 부울경언론학회 회장
- ▶ (현)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 (현)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 영 철**

- ▶ (사)제주언론학회 초대회장
- ▶ (현)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공동대표
- ▶ (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윤 희 각**

- ▶ 국민일보, 동아일보 기자
- ▶ (현) 부산외국어대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고 창 범**

- ▶ 제민일보 논설위원
- ▶ (현) (주)제주풍력 상무



**조 정 현**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 ▶ (현) 변호사



**문 윤 택**

- ▶ 한국광고홍보학회 기획이사
- ▶ 한국언론학회 이사
- ▶ (현) 제주국제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김 영 미**

- ▶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 (현) 변호사



**강 문 속**

- ▶ (현) 변호사

## 2. 설립근거 및 기능

###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3. 연혁

- 1981. 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 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
-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 4. 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
- 1985. 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 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1. 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993. 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 1999. 4. 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
-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2005. 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 4. 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 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 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4. 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 2015. 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2017. 1. 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재유형 다양화
- 2017. 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 2018. 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 취임

## 4. 기구

###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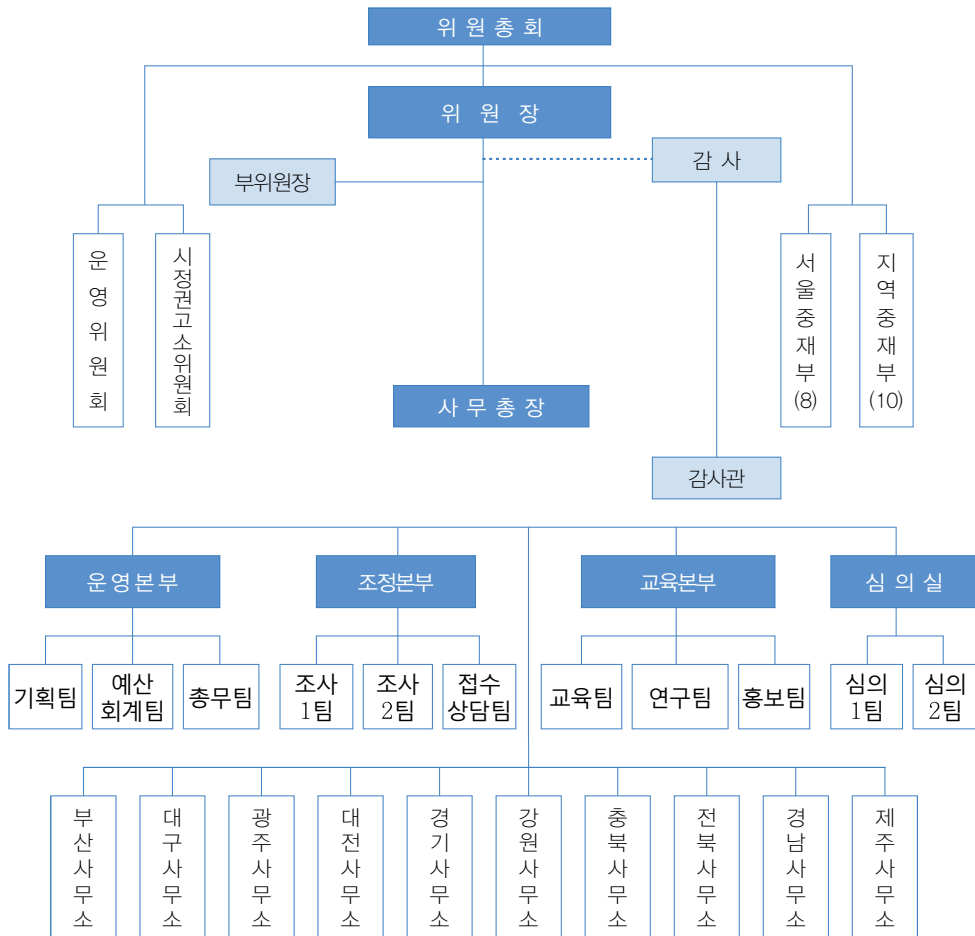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사무처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18년 12월 말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임금피크 전문직	계
정 원	1	87	-	88
현 원	1	86	1	88

【위원회 기구표】



## 5. 2018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6,662	6,631	31
경상비	경상비	2,275	2,249	26
사업비	심의사업	1,781	1,762	19
	조사연구사업	343	322	21
	홍보 및 교육사업	392	386	6
	소계	2,516	2,470	46
합계		11,453	11,350	103


##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변재일 의원	2016. 9. 1. 의안번호 200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중재위원 추천권자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안 제7조제3항)</li> <li>-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안 제8조제2항)</li> <li>-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li> <li>-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li> <li>-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안 제34조)</li> </ul>
노웅래 의원	2016. 9. 5. 의안번호 2002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li> <li>-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li> <li>-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li> <li>-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li> <li>- 위원회 재원 충당에 언론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하고, 국가의 필요경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li> <li>- 중재위원회의 회계처리,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서 제출에 대한 시안을 명문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li> </ul>
곽상도 의원	2016. 10. 28. 의안번호 2002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및 제7조)</li> <li>-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5조제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li> </ul>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 등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li> <li>-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li> <li>-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li> </ul>
주호영 의원	2017. 4. 25. 의안번호 2006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 표시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안 제17조의2제1항)</li> <li>-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li> </ul>
송희경 의원	2017. 8. 4. 의안번호 2008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안 제4조의4항 신설)</li> <li>-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안 제33조 신설 등)</li> </ul>
강효상 의원	2018. 5. 9. 의안번호 2013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 규정(안 제4조제4항 신설)</li> <li>- 고충처리인의 권고 수용 의무화(안 제6조제3항)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항제1의2호 신설)</li> <li>-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안 제33조 신설)하고, 언론사 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항제5호 신설)</li> <li>-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 가짜뉴스를 포함하고 청구기간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14조제1항)하며, 추후보도청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안 제17조제1항)</li> <li>-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강화(안 제17조의2제1항)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 근절(안 제4조제4항, 안 제33조 등)</li> </ul>
백혜련 의원*	2018. 8. 3. 의안번호 2014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결정사유 중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4호)</li> </ul>
박광운 의원	2018. 11. 29. 의안번호 2016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지면의 첫 면(인터넷 매체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6항제1호~제4호 신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li> </ul>

\* 백혜련 의원 발의안은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되어 2018. 12. 24. 공포(2019. 3. 25. 시행)

## 7. 2018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2017년도 연간보고서	2018. 2. 28.	300부
2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46호)	2018. 3. 30.	800부
3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2018. 5. 31.	PDF / E-Book
4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2018. 5. 31.	PDF / E-Book
5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2018. 6. 30.	650부
6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제147호)	2018. 6. 30.	800부
7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8. 6. 30.	1,000부
8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제1호)	2018. 8. 1.	E-BOOK
9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제148호)	2018. 9. 30.	800부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18. 10. 1.	PDF / E-BOOK
11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2호 및 제1·2호 통합본)	2018. 12. 19.	450부
12	2018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18. 12. 21.	200부
13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책자(국영문)	2018. 12. 26.	각 500부
14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2018. 12. 31.	650부
15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제149호)	2018. 12. 31.	800부
16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5,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2018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Annual Report

---

인 쇄 일 2019년 2월 25일  
발 행 일 2019년 2월 28일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 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725-5216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